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협력
실무안내

1994

통 일 연

책을 내면서

통일을 평화적이고 질서있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이질화된 민족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회복·발전시키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회·문화적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간에 상호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어야 하겠습니까.

1990년 8월 1일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시행된 이래 학술·문화·체육·종교 등 여러 분야에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이 추진되어 분야에 따라서는 상당한 성과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남북 직접왕래 보다는 제3국을 통한 우회적인 교류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 책은 사회문화분야에서 남북 상호방문이나 공동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다소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남북교류협력과 관련된 법절차를 비롯하여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 추진방법·실태 등을 수록하였습니다만, 여러가지 미진한 부분이 많은 상태에서 발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상세히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는 통일원 남북교류협력상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 책자가 남북사회문화교류에 관심있는 여러분께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1994. 12

통일원 교류협력국

목 차

제 I 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절차	1
1. 남북한 주민 접촉	3
가. 접촉의 개념	3
나. 북한주민접촉 절차	3
2. 남북한 왕래	7
가. 남북한 왕래의 개념	7
나. 남북한 왕래절차	8
다. 남북한 왕래의 형태	13
3. 재외국민의 북한방문	14
가. 재외국민의 범위	14
나. 재외국민의 북한방문 절차	14
4.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	15
가. 협력사업의 개념	15
나. 협력사업 추진절차	16
5. 협력기금의 사용	19
가. 남북협력기금 설치목적 및 운용현황	19
나. 남북협력기금 신청절차	20
제 II 장 남북교류협력의 준비와 추진	23
1. 기획단계	25
가. 교류사안의 선정	25
나. 교류상대방	26
다. 중개인(단체)	27

- 2. 교류단계27
 - 가. 실무접촉27
 - 나. 제3국에서의 교류28
 - 다. 남북한 왕래교류.....29
- 3. 접촉교류시 유의사항34

제Ⅲ장 남북교류협력 추진실태35

- 1. 학술분야37
 - 가. 추진실태37
 - 나. 교류방향46
- 2. 문화예술분야47
 - 가. 추진실태47
 - 나. 교류방향52
- 3. 종교분야53
 - 가. 추진실태53
 - 나. 교류방향55
- 4. 체육분야57
 - 가. 추진실태57
 - 나. 교류방향62
- 5. 언론·출판분야64
 - 가. 추진실태64
 - 나. 교류방향65

부 록

- 북한의 사회문화분야 단체·인명 현황69
-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103
- 남북교류협력 관련 남북간 합의문건162

제 I 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절차

1. 남북한 주민접촉
2. 남북한 왕래
3. 재외국민의 북한방문
4.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
5. 협력기금의 사용

제 I 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절차

1. 남북한 주민 접촉

가. 접촉의 개념

남북교류협력을 목적으로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정부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기서 접촉이라함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서로 정보나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과정을 말하며, 이때 의사교환의 방법·수단·장소 등은 불문하고 남북한 주민 상호간에 어떤 형태로든 특정내용의 의사가 교환되었다면 접촉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북한주민을 직접 대면하여 의사를 교환하는 것은 물론, 중개인(제3자)을 통하거나 전화, 우편, FAX, TELEX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의사교환도 모두 접촉에 해당된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서 말하는 남한주민은 남한에 적을 둔 주민(법인·단체 포함)을 의미하며, 북한주민은 북한에 적을 둔 주민과 조총련 등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 구성원을 의미한다.

남북한 주민이 상호 왕래를 통해 학술·문화·종교 등의 분야에서 교류를 하고자 할 경우나, 제3국에서 개최되는 교류행사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참가할 경우 등 남북한 교류·협력은 필연적으로 접촉(상호 의사교환)이 수반되므로 사전에 접촉승인을 받고 추진해야 한다.

나. 북한주민접촉 절차

■ 북한주민접촉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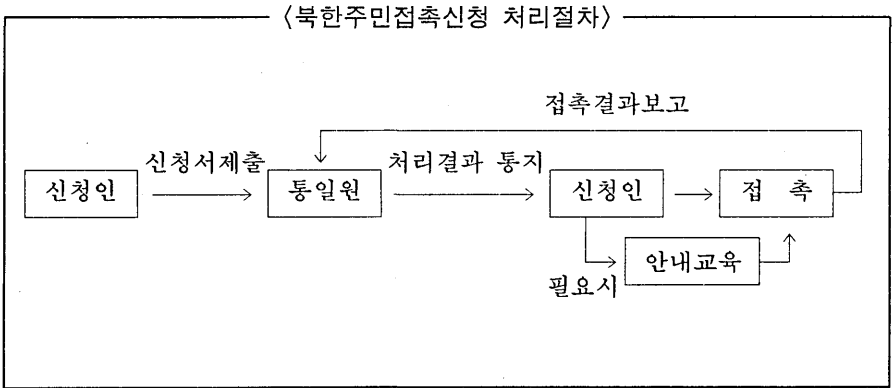
북한주민을 접촉하고자 하는 경우, 접촉 20일 전까지 통일원장관에게 북한 주민접촉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우편신청이나 대리인 신청도 무방하며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북한주민접촉신청은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20일내에 처리되며 그 처리결과는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접촉신청이 승인된 경우에는 접촉인, 피접촉인, 접촉목적, 접촉방법, 승인 유효기간 등이 적시되어있는 문서가 신청인에게 발송되며, 불허의 경우에도 불허이유가 명시된 문서가 우송된다.

이러한 처리기간은 보통 10~20일이 소요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 신청서류

- 북한주민접촉신청서 1부
- 신원진술서 1부
-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북한주민접촉신청서>는 신청인 인적사항, 피접촉예정인 인적사항, 접촉목적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원진술서>는 신청인의 신원사항을 작성항목에 따라 직접 기재하고, 우측 상단에 신청

인 사진을 부착해야 한다.

<북한주민접촉신청서> 와 <신원진술서>는 소정양식으로 통일원 『남북교류협력상담실』에 비치되어 있다.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신청사안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접촉계획서, 신청단체 소개서, 교류내용과 접촉목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료 등이다.

접촉계획서는 신청인이 추진하고자 하는 남북교류사업과 접촉일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설명하는 서류로서 <북한주민접촉신청서>에 기재한 접촉목적, 접촉경위, 접촉일정 및 장소 등의 내용항목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소정양식은 없으며, 신청인이 자유롭게 작성하면 된다.

신청단체소개서는 교류주체의 남북교류 수행능력을 가늠해 보기 위한 참고자료로서 조직현황, 정관, 주요 활동내용 등을 포함하는 것이 좋다.

이 외에도 초청장, 행사개요서, 프로그램 등 기타 관련자료를 첨부하면 승인여부를 판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 접촉 안내교육

통일원장관은 북한주민접촉을 승인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접촉인에게 안내교육을 받을 것을 승인조건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안내교육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접촉승인을 받은 자가 자발적으로 안내교육을 요청할 수도 있다.

안내교육은 북한주민접촉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 관련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남북한간의 원활한 교류협력을 돕기 위한 것이다.

교육과목은 남북관계현황, 북한실상, 북한주민접촉시 행동요령, 기타 접촉목적과 관련된 사항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 접촉결과 보고

통일원장관으로부터 접촉승인을 받아 북한주민을 접촉한 경우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통일원장관에게 접촉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접촉결과 보고는 6하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자세하게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북한주민접촉자는 접촉결과에 따른 향후 대책을 정부와 협의하고 필요한 법·행정적 절차에 관한 안내를 받음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접촉결과보고서식은 특정양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나, 승인문서와 함께 우송되는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 승인유효기간 및 재신청

북한주민접촉 승인기간은 최장 2년의 범위내에서 사안에 따라 신축적으로 결정된다. 승인유효기간중에는 승인받은 접촉목적 범위내에서는 횡수에 관계없이 접촉할 수 있다.

그러나 승인기간내에 소정의 성과를 얻지 못하거나 북한측과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재승인을 받아 계속 협의를 진행시키면 된다. 재승인 신청시 필요한 신청서류와 절차는 최초 신청때와 동일하다. 다만, 신청서류중 <신원진술서>와 같이 처음 신청할 때와 동일한 서류는 사정변경이 없는 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그간의 북한주민과 접촉한 내용 등 추진경과를 설명하는 자료를 추가해야 한다.

또한, 비록 승인유효기간 내의 접촉이라 할지라도 승인받은 접촉목적 범위를 벗어난 접촉을 할 경우나 접촉신청인이 변경될 경우에도 역시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 사후 신고

북한주민과 접촉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절차를 밟아 사전에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부득이 사전승인을 얻지 못하고 북한주민을 접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경우에 한하여 접촉후 7일 이내에 접촉사실을 통일원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면 사전에 승인을 얻은 것으로 같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북한주민의 참가가 예상되는 국제행사의 참가를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동 행사에서 또는 동 행사와 관련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 외국을 여행하는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 외국에서 가족(8촌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인 북한주민과 회합한 자
-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 편지의 접수 등 사전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사후신고 서식으로는 소정양식인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내에 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신·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일원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사후에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 남북한 왕래

가. 남북한 왕래의 개념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통일원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남북한 왕래는 남한주민이 북한지역을 방문하거나 북한주민이 남한지역을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북한지역을 방문하는 남한주민은 <북한방문증명서>를, 남한지역을 방문하는 북한주민은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지하여야 한다. 판문점을 통해서 남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것은 물론, 제3국을 경유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다만,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재외국민은 해외에서 북한을 방문할 때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는 대신 재외공관에 <북한방문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조총련』인사와 같이 외국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여권을 소지하지 아니한 해외거주 동포가 남한을 방문할 때는 <남한방문증명서> 대신 『여권법』에 의한 <여행증명서>를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아 방문하여야 한다.

나. 남북한 왕래절차

(1) 북한방문 절차

■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통일원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우편 신청이나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며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다만, 대리인 신청시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본인의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처리토록 되어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신청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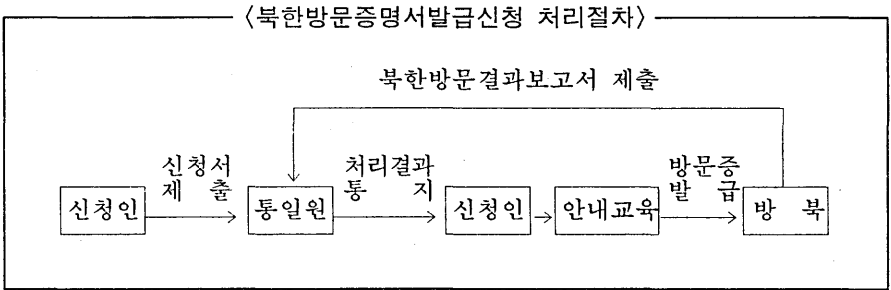
북한방문이 승인된 경우는 증명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방문 목적, 방문기간, 신장, 방문증 발급일자 그리고 방문자 사진이 부착된 <북한방문증명서>가 발급된다.

발급된 <북한방문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리인을 통해 수령할 수도 있다. 대리인을 통해 수령할 경우는

본인의 위임장,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소정의 북한방문 안내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안내교육을 이수한 후 <북한방문증명서>가 교부되며, 해외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재외공관을 통해 <북한방문증명서>가 전달된다.

북한방문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불허이유가 명시된 문서가 신청인에게 우송된다.



■ 신청서류

-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1부
- 신원진술서 1부
- 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전 3월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 가로 3.5cm 세로 4.5cm) 4매
-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또는 허가서(해당자에 한함)
-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 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와 <신원진술서>는 소정양식으로 통일원 『남북교류협력상담실』에 비치되어 있다.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에는 신청인 인적사항, 방문대상자 인적사항, 방문목적, 방문예정일정, 방문 및 귀환예정경로 등을 기재 하며, 우측상단에 신청인 사진을 부착하여야 한다. <신원진술서>는 북한주민접촉시 제출하는 것과 동일하다.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또는 허가서>는 군미필자(허가서)의 경우 해당지역 병무청에서, 군필자(신고서)는 동사무소에서 발급해 주는 서류이다.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는 북한기관이 발행하는 초청장 등 신변안전보장관련 문서를 의미하며, 초청장의 경우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초청장은 일반적으로 초청목적, 초청기간, 피초청인,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 보장, 초청인(기관)의 서명·날인, 발급일자 등으로 구성된다.

<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는 신청사안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방북활동계획서, 신청단체 소개서, 교류 내용과 방북목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하다.

■ 방문기간

방문기간은 방문목적과 북한측의 초청내용에 따라 적정기간이 부여된다.

방문기간은 최장 1년 6월까지 가능하며, 필요할 경우 처음 승인된 방문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도 있다. 방문기간 연장은 소정의 <방문기간연장신청서>에 연장사유 등을 적어 신청해야 한다.

또한 최초 북한방문증명서 발급신청시 <병역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또는 허가서>를 제출한 방문자는 병역법에 의한 <기간연장 허가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만일 연장한 기간의 만료후에도 계속 북한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면 <북한방문증명서>를 새로이 발급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와 서류는 최초 신청때와 같다.

다만, 신청서류중 <신원진술서>와 같이 처음 신청할 때와 동일한 서류는 사정변경이 없는 한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그 동안의 방문활동을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북한방문 안내교육

북한방문자는 방문전에 북한방문 안내교육을 받아야 한다. 안내교육은 북한방문과 관련된 필요한 지식과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북한방문자의 원활한 방문활동을 돕기 위한 것이다. 교육과목은 남북관계현황, 북한실상, 북한방문시 행동요령, 기타 방문목적과 관련된 사항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 출입심사

북한을 직접 왕래할 때는 출입장소에서 출입심사공무원에게 소정의 <출입신고서>와 <왕래주민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하고 출입심사를 받아야 한다.

출입심사에서는 신원확인, 휴대물품 등의 검사, 검역, <북한방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의 확인 등이 이루어진다.

특히 휴대물품은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통일원고시)에 따라 반입·반출이 불허되는 물품과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야 반입이 허용되는 물품 등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부록편에 소개되어 있는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을 참고하기 바란다.

■ 북한방문증명서 재발급신청

<북한방문증명서>가 분실되었거나 사용이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었을 경우, 기타 기재사항에 변동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북한방문증명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재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소정양식인 <방문증명서재발급신청서>와 증명서 재발급용 사진(2매)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북한방문증명서 반납

<북한방문증명서>는 방문을 마치고 귀환할 때 반납하여야 한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직접 귀환할 경우는 출입장소(판문점 등)에서 반납해야 하며, 제3국을 통해 귀환할 경우에는 귀환후 즉시 통일원에 반납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재외공관에 반납할 수도 있다.

■ 북한방문 결과보고

북한방문자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해서 북한방문결과를 통일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정의 보고서식은 없으며 신청인이 자유롭게 작성하면 된다.

(2) 남한방문 절차

남한방문절차는 원칙적으로 남한을 방문하고자 하는 북한주민에게 해당되는 사항이나 현실적으로는 북한주민을 초청하는 남한초청자가 북한주민을 대신하여 제반절차를 밟게 됨으로 북한주민 초청절차라고도 할 수 있다.

신청서류 외에는 기본적으로 북한방문절차와 동일하므로 여기서는 신청서류를 소개하는 것으로 그 설명을 대신한다.

■ 신청서류

- 남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1부
- 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전 3월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사진으로, 가로 3.5cm·세로 4.5cm) 4매
- 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 본인의 위임장 및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초청장 사본 등 초청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남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법령에 의한 소정양식으로 남한 초청자가 북한주민을 대신하여 작성한다.

<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는 북한주민초청과 관련된 행사계획서, 초청경위서, 북한주민의 남한방문 의사를 확인하는 자료 등이다.

나머지 서류는 대리신청시 대리신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다. 남북한 왕래의 형태

남북한 왕래의 형태는 왕래경로에 따라 판문점을 통한 왕래와 제3국을 통한 왕래로 나눌 수 있으며, 판문점과 제3국을 통한 왕래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판문점을 통한 남북한 왕래는 남북한 주민이 판문점을 통해서 상대지역을 직접 왕래하는 경우로서 왕래절차에 대한 남북한 당국간의 협의가 있는 후 가능하게 된다. 과거 남북당국간 회담이나 남북한 전통음악 교환공연을 위한 왕래가 이에 해당된다.

제3국을 통한 남북한 왕래는 남북한 주민이 제3국을 경유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경우로서 경유지로는 보통 중국(북경)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 경우 북경주재 북한대사관에서 북한입국에 따른 별도의 수속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과 평양에서 개최되었던 UNDP회의에 참가하는 남·북한 참석자들이 중국을 경유하여 남북한을 왕래한 바 있다.

판문점과 제3국을 경유한 남북한 왕래는 판문점을 통해 남한 또는 북한을 방문한 후 방문지에서 제3국을 통해 귀환하는 경우와 제3국을 통해 남한 또는 북한을 방문한 후 판문점을 통해 귀환하는 경우이다.

1991년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남한선수들이 판문점을 통해 서울에 온 북한선수들과 함께 서울결단식을 갖고 포르투갈로 출국했다가 현지에서 곧장 입북하여 평양 해단식을 마치고 판문점을 통해 귀환한 바 있다.

3. 재외국민의 북한방문

가. 재외국민의 범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은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는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북한방문은 사전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재외국민이라 함은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얻은 자이다.

따라서 외국에 체류하고 있다고 해도 유학생·교환교수 등과 같은 단기체류자는 여기서 말하는 재외국민에 해당되지 않는다.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허가 요건은 체류국의 관련제도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므로 재외국민의 자격을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 국가에 따라서 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도 있으며 장기체류허가의 요건도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나. 재외국민의 북한방문 절차

재외국민이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북한을 방문하기 전에 재외공관에 <북한방문신고서>, <기타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 사전에 신고를 하지 못하고 북한을 방문한 경우에는 귀환 후 10일 이내에 <북한방문결과보고서>를 제출 하면 사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사전에 신고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정당해야 한다.

4.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

가. 협력사업의 개념

사회문화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의 분야에서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행하는 비영리적 활동으로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협력사업자 승인과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다.

또한 사회문화 협력사업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사회·문화 공동체 형성을 위해 상대방 지역이나 제3국에서 당사간의 합의 및 계약에 따라 계획·준비·실시 및 사후처리 등이 연속성 있게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지금까지 사회문화분야에서 이루어진 남북한 협력사업은 1991년도 일본 지바현에서 개최된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포르투갈에서 개최된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남북단일팀이 참가한 경우 2건으로 다소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본격적인 남북 『화해·협력』 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사회문화분야 협력사업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예상가능한 협력사업의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 조사·연구·저작·편찬과 그 보급 ○ 영화·연극·음악·무용·기타 예술적 또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동 제작·상영 및 공연 ○ 음반 및 영상물·방송프로그램의 공동 제작 ○ 국내·외 체육행사 단일팀 출전 및 공동 개최 ○ 학술·문화 연구단체,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체육진흥을 위한 지원사업의 공동추진 ○ 기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원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
|--|

나. 협력사업 추진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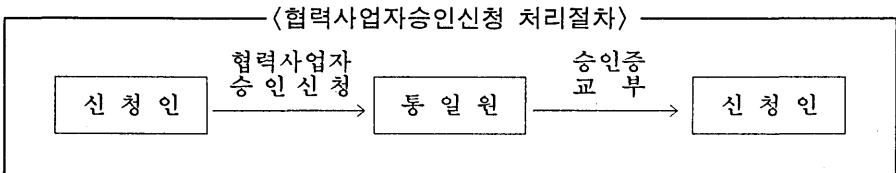
협력사업은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협력사업자 승인과 협력사업 승인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1) 협력사업자승인절차

■ 협력사업자승인신청

북한주민과의 접촉이나 방북절차를 거쳐 북한측 상대방과 논의한 사항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해 사업에 대한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력사업자 승인은 협력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개인(단체)의 경험, 전문성 등 자격과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다.



협력사업자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남북교류협력추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해당분야의 국내 또는 국외에서 최근 3년 이내에 사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 신청서류

- 협력사업자승인신청서 1부
- 협력사업 개요 설명서 1부
- 의향서 사본 1부
- 국내 혹은 국외에서 최근 3년이내의 사업실적 1부
- 정관 및 등기부 등본(법인의 경우) 1부
- 정관 또는 규약 및 등록증 또는 신고증(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협력사업자승인신청서>는 통일원 소정양식이며 <협력사업 개요 설명서>는 추진하고자 하는 당해 협력사업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서로 특별한 양식없이 신청인이 자유롭게 작성하면 된다.

<의향서 사본>은 북한측 상대방의 당해 협력사업 추진의사를 증빙하는 서류이다.

<국내 혹은 국외에서 최근 3년이내의 사업실적>은 협력사업자가 추진하고자 하는 협력사업에 대해 경험·전문성 등의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기 위한 서류이다.

■ 처리기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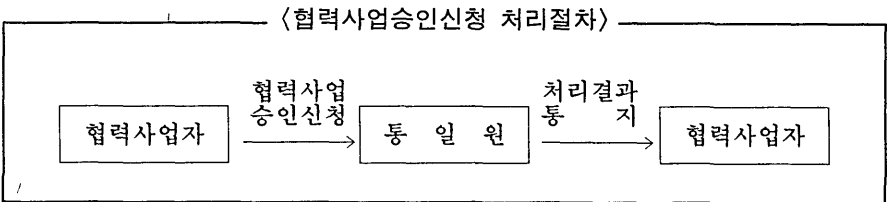
협력사업자 승인은 원칙적으로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2) 협력사업의승인절차

■ 협력사업승인 신청

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은후 협력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매 사업마다 북한측 당사자와 구체적 협의를 거친 후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협력사업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력사업 승인은 당해 협력사업의 실현가능성, 협력사업자의 능력과 사업의 내용 및 규모와의 부합여부, 타 협력사업과의 경합 및 남북한 간의 분쟁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게 된다.



■ 신청서류

- 협력사업승인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1부
- 협력사업 상대자와의 협의서 1부
- 북한당국의 확인서 1부
- 기타 통일원장관이 협력사업승인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협력사업승인신청서>는 법령에 의한 소정양식이며, <사업계획서>에는 추진 경위, 주요내용, 세부추진계획,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과 기대효과 등을, 그리고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에는 북측당사자의 인적사항, 경력(기구인 경우 연혁), 활동실적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협력사업 상대자와의 협의서>에는 협력사업의 북측상대자와 최종 합의된 것으로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 협력사업의 명칭
- 사업수행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기구명, 소재지, 임원의 구성 등
- 사업의 목적, 기간, 방법, 당사자의 임무, 산출물의 처리, 소요자금 및 당사자간 자금분담률
- 분쟁해결, 효력발생 및 소멸, 불가항력의 사유
- 공동저작의 경우 저작권의 행사, 양도, 대여, 소멸 및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등

<북한당국의 확인서>는 북한법령에 의거 해당 협력사업 승인권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협의서 내용의 이행보장과 협력사업 관련자의 신변보장 및 협력사업 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 등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

■ 처리기한

협력사업승인 처리기간은 〈협력사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30일이다.

■ 협력사업자의 보고

협력사업자는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의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사업의 착수, 사업진행 상황(분기별), 사업의 만료 또는 약정이나 계약의 해지·해제, 분쟁 및 사고의 발생, 협력사업자(대표자)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일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남북협력기금의 사용

가. 남북협력기금 설치목적 및 운용현황

남북협력기금은 남북한간 인적·물적 교류협력을 지원·촉진시킴으로써 민족공동체의 회복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1990년 8월 1일 제정된 『남북협력기금법』에 의해 설치 운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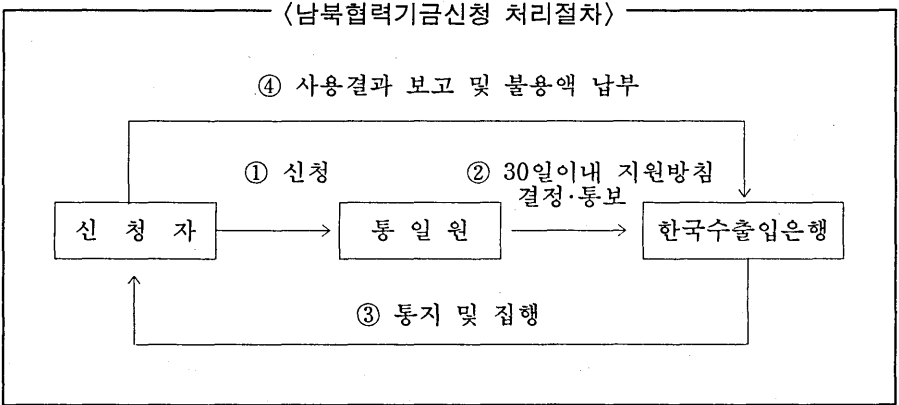
지원방법은 남북한간 주민왕래 자금지원,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사업 자금지원, 남북한간 교역 및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손실보조, 자금대출, 채무보증, 기타 금융기관 및 민족공동체 회복사업에 대한 지원이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1991년 최초로 250억원을 조성한 이래 1994년말 현재 1,450억원이 정부출연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1991년의 남북한 축구·탁구단일팀구성 등 4건에 대해 27억여원을 지원한 바 있다.

나. 남북협력기금 신청절차

남북한간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에 대한 지원은 무상지원을 원칙으로하고 있으며, 주민왕래 지원과 문화·학술·체육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금사용의 신청 및 승인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1) 주민왕래 지원

■ 지원대상

주민왕래지원자금의 지원대상은 남북한을 왕래하고자 하는 남한과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 및 이를 주선·지원하는 자(단체포함)이다.

- 자비에 의해 남북한간 왕래가 어려운 경우
- 개인별 부담이 적절치 않은 경우
- 남북한 당국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에 의해 왕래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키로 한 경우
- 기타 남북한간 왕래의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한도

지원한도는 숙식비, 교통비 등 기본적 경비 범위내로 하되, 당국 간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합의에 의한다.

■ 신청서류

- 주민왕래지원자금 신청서 2부
- 방문자 명단(4인이상인 경우)
- 방문계획서 1부
- 기금사용계획서 1부
- 방문자의 주민왕래 지원자금 신청위임장(대리인일 경우)
- 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별도 요청시)

(2)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 지원

■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남북한 공동의 문화·학술·체육분야의 행사 및 활동을 추진하는 자로서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한 사업시행의 승인을 받은 자(단체포함)이다.

■ 지원한도

지원한도는 문화·학술·체육협력사업의 계획, 준비, 실시 및 사후 처리에 소요되는 금액 범위내로 하며,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수익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그 예상수익금을 제외한 범위 이내이다.

■ 신청서류

- 문화·학술·체육협력 지원자금 신청서 2부
- 사업승인서 사본 또는 사업승인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1부
- 사업상대자와의 협의서 사본 1부
- 기금사용계획서 1부
- 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별도 요청시)

제 II 장 남북교류협력의 준비와 추진

1. 기획단계
2. 교류단계
3. 접촉교류시 유의사항

제 II 장 남북교류협력의 준비와 추진

1. 기획단계

가. 교류사안의 선정

교류사안은 남북상호간 이해와 인식의 폭을 넓히고 민족공동체의 회복·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신중히 선정하여야 한다.

사회문화분야 자체가 방대하고 또 각 분야마다 교류가능 영역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모든 사안을 소개하기는 어려우나 다음 몇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교류주체가 해당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안을 선정해야 한다.

남북교류협력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추진주체가 해당분야에서의 전문성과 함께 조직·인원·재정 등에서 이를 감당할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안을 선택해야 하며 해당분야 구성원들간의 합의를 모아 대표성을 띠고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급적 쉽고 작은 교류부터 추진하는 것이 좋다.

예컨대 관련자료의 교환, 제3국에서의 교류, 남북한 왕래 등의 순으로 교류의 폭과 깊이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실현가능성을 높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처음부터 대규모 인원이 동원되고, 기간과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교류사업의 추진은 남북교류협력의 초기단계에서는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 할 수 있겠다. 특히 흥행성 위주 또는 전시용의 교류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남북한간 수준차가 큰 분야에서의 교류도 이를 실현시키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셋째, 민간차원의 성격에 맞는 교류사안을 선정해야 한다.

예를들면 남북한 동일맞춤법 제정 등과 같이 남북한 당국간에 합의가 있어야하는 사안 등은 민간차원에서 추진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교류목적이 순수하여야 하며 정치·이념성이 배제된 사안이어야 한다.

남북민간교류는 교류취지가 순수해야 하며 어느 일방의 체제선전에 이용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나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농후한 사안은 부적합하다. 특히 문화예술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준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헌정 기본질서와 국가안전보장에 위해를 미치는 사안, 공공복리·공공질서를 해치는 사안, 남북관계 개선과 민족화해를 저해하는 사안 등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교류협력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기본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사안들이다.

이와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그 동안 실제 이루어진 교류사례, 관계전문가나 경험자의 조언 등을 참고하면 교류사안을 선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나. 교류상대방

교류상대방은 추진하고자 하는 교류사안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북한의 관계자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처럼 직능단체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구성되어 있는 단체들 조차도 조직·활동 등 구체적인 현황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합한 교류상대방을 찾기가 쉽지 않다.

교류상대방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는 『북한자료센터』(광화문 우체국 6층)를 방문하여 북한자료를 찾아보거나, 중국·일본 등의 유관단체에게 자문을 구하는 방법 등이 있다.

또한 과거 유사한 남북교류사례를 통해서도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 중개인(단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남북한간의 협의는 남북당사자간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현실 여건상 중개인(단체)을 매개로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중개인(단체)은 우리측의 의사를 북한 교류상대방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신뢰할만하고 북한과 수시 연락이 가능한 유력인사나 단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해당 분야와 관련이 있는 교포단체·인사, 제3국 유관기관, 국제기구 등을 중개인(단체)으로 이용하고 있다.

2. 교류단계

가. 실무접촉

실무접촉은 북한과 특정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가 이루어졌을 경우, 쌍방 관계자들이 이를 실행하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는 접촉이다.

실무접촉의 방법으로는 판문점접촉과 제3국접촉이 있다.

판문점 실무접촉은 남북당국간 사전 연락주선에 의해 교류당사자간에 판문점에서 이루어진다. 당국주선에 의해 판문점에서 접촉할 경우 교류의 추진내용 및 절차에 관한 공식성을 띠게 되나, 『정전협정』 등의 판문점출입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입과 이용이 제한되는 점이 있다.

향후 남북당국간의 협의가 이루어져 인적 접촉 및 왕래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판문점을 통한 교류추진이 보다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판문점을 통한 접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제3국에서 접촉하는 경우가 많다. 제3국 실무접촉은 시간·경비가 다

소 소요되나, 교류당사자가 별도의 절차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점에서 편리하다.

이러한 실무접촉의 목적은 남북교류협력행사 추진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교류행사에 따른 일정, 참가인원, 프로그램 및 부대행사, 진행방법, 기타 행정사항 등 관련 세부 시행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하게 된다.

나. 제3국에서의 교류

제3국에서의 교류는 제3국에서 개최되는 학술·문화·종교 등의 행사에 제3국과 함께 남북한이 동시에 참가하는 다자간의 교류형태로 이루어진다.

남북왕래에 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한 상황하에서는 남북관계 현실에 비교적 영향을 덜 받는 제3국에서의 남북교류가 많이 성사되고 있다.

이러한 교류형태는 흔히 중국·일본·미국 등의 해외동포사회를 매개로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제3국에서의 교류를 추진할 경우는 다음과 같은 점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3국 교류는 남·북 당사자간의 직접적인 협의 대신에 중개단체(해외동포단체 또는 제3국 단체)가 북한을 초청하고 제반 관련사항을 협의하기 때문에 교류의 성사여부는 중개단체의 역량에 의존하게 되어 중개단체 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북한은 행사참가 여부를 개최일자에 임박해서 주최측에 통보해 오거나 참석을 약속한 행사조차 뚜렷한 해명없이 불참하는 경우가 많아 교류추진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있어 교류추진에 애로를 겪기도 한다.

다. 남북한 왕래교류

■ 왕래경로

남북한 왕래경로로는 판문점을 통한 왕래와 제3국을 경유한 왕래를 들 수 있다.

판문점을 통한 왕래는 「남북고위급회담」과 같이 남북 당국간 회담을 위한 남북왕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순수 민간교류의 경우는 판문점 실무접촉과 남북한 당국간에 판문점을 통한 남북왕래에 대해 사전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일부 이루어진 바 있다.

1990년 남북국악인들의 남북왕래와 1991년 제2차 및 1992년 제3차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세미나에 참석하는 남북 여성인사들의 남북왕래가 민간차원의 교류로서 판문점을 경유하여 남북을 왕래한 예이다.

중국 등 제3국을 경유하여 서울·평양을 방문한 예는 1993년 일본의 전후처리 관련 토론회 참가자의 방북, UNDP회의 북한대표단의 서울방문 등이 있다.

■ 체류일정

체류일정은 실무접촉단계에서 사전 협의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 숙박, 교류행사 진행, 관광 및 시찰, 부대행사 등 체류시 주요일정 계획은 정부와 협의를 거쳐 치밀하게 수립될 필요가 있다.

특히 부대행사로 이루어지는 참관시설의 방문은 방문자의 신변안전 등과 관련해서 반드시 정부와 사전 협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로 남북한 왕래행사 일정에 관한 사례를 소개한다.

'90범민족통일음악회(평양) 일정

일 자	시 간	일 정
'90. 10. 14	오 전 오 후 저 녀	○ 판문점 통과(11 : 00) ○ 고려호텔 도착(16 : 00) ○ 환영만찬(옥류관)
'90. 10. 15	오 전 오 후 저 녀	○ 동평양대극장 관람 ○ 만경대학생소년궁전 관람 ○ 윤이상음악회 관람
'90. 10. 16	오 전 오 후 저 녀	○ 2·8문화회관 무대점검 ○ 국제문화회관 방문 ○ 평양 시내 관광 ○ 윤이상 음악회 관람
'90. 10. 17	오 전 오 후	○ 공연연습(동평양대극장) ○ 개막식 총연습(2·8문화회관)
'90. 10. 18	오 전 오 후 저 녀	○ 시내쇼핑 ○ 범민족통일음악회 개막(인민문화궁전) ○ 범민족통일음악회 개막만찬(주최측 주최)
'90. 10. 19	오 전 오 후 저 녀	○ 평양음악무용대학 방문 ○ 윤이상음악연구소 방문 ○ 공연연습(2·8문화회관) ○ 서울전통음악연주단 단독공연
'90. 10. 20	오 전 오 후 저 녀	○ 고려호텔 출발(09 : 00) ○ 금강산호텔 도착(15 : 00) ○ 금강산 관광
'90. 10. 21	오 전 오 후 저 녀	○ 금강산 출발 ○ 평양도착 ○ 휴식

제II장 남북교류협력의 준비와 추진

일 자	시 간	일 정
'90. 10. 22	오 전	○ 휴식
	오 후	○ 쇼핑
	저 녀	○ 해외동포연주단과 합동공연(봉화예술극장)
'90. 10. 23	오 전	○ 휴식
	오 후	○ 범민족통일음악회 폐막식(2·8문화회관)
	저 녀	○ 집단체조경기 관람
'90. 10. 24	오 전	○ 평양출발
	오 후	○ 판문점 도착(12:00)

'90 송년통일전통음악회(서울) 일정

일 자	시 간	일 정
'90. 12. 8	오 전	○ 판문점 통과(10:00)
	오 후	○ 웨라튼위키힐 도착 ○ 예술의 전당 답사
	저 녀	○ 환영만찬(문화부장관 주최)
'90. 12. 9	오 전	○ 비원 방문
	오 후	○ 국립극장 답사
	저 녀	○ 제1차 남북합동공연 공연연습(예술의 전당)
'90. 12. 10	오 전	○ 롯데월드민속관 참관
	오 후	○ 공연연습(국립극장)
	저 녀	○ 제2차 남북합동공연
'90. 12. 11	오 전	○ 국립현대미술관 관람
	오 후	○ 삼익악기공장 참관
	저 녀	○ 환영만찬(초청측 주최)
'90. 12. 12	오 전	○ 국립국악원 참관
	오 후	○ 공연연습(국립극장) ○ 특별공연
	저 녀	○ 송별만찬(북측주최)
'90. 12. 13	오 전	○ 숙소출발(09:30) ○ 판문점 통과(11:30)

제2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세미나 일정

일 자	시 간	일 정
'91. 11. 25	오 전 오 후 저 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문점 통과(11:00) ○ 라마다올림피아호텔 도착 ○ 북한 여연구, 부친 여운형 묘소 참배 ○ 환영만찬(주최측 주최)
'91. 11. 26	오 전 오 후 저 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미나 개최 ○ 세미나 개최 ○ 국회 방문 ○ 만찬(여성의원 주최)
'91. 11. 27	오 전 오 후 저 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미나 개최 ○ 남북여성환담회 개최 ○ 여성지도자들과의 간담회 개최 ○ 『친교의 밤』행사 개최
'91. 11. 28	오 전 오 후 저 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복궁 참관 ○ 휴식 ○ 휴식
'91. 11. 29	오 전 오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미나 평가모임(00:10~05:00) ○ 숙소출발 ○ 판문점 통과(12:00)

제3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평양세미나 일정

일 자	시 간	일 정
'92. 9. 1	오 전 오 후 저 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문점 통과(10:00) ◦ 고려호텔 도착 ◦ 평양산원, 김정숙택아소 참관 ◦ 북측 준비위주최, 환영연회(목련관)
'92. 9. 2	오 전 오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회(인민문화궁전) ◦ 토론회(") ◦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참관
'92. 9. 3	오 전 오 후 저 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산 출발 ◦ 금강산 등산(옥류담, 구룡폭포 등) ◦ 영화 관람("금강산으로 가자")
'92. 9. 4	오 전 오 후 저 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강산 등산(만물상 등) ◦ 삼일포 관광 ◦ 평양도착(20:20)
'92. 9. 5	오 전 오 후 저 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철, 개선문 참관 ◦ 종군위안부와의 좌담회(인민문화궁전) ◦ 만수대창작사, 평양 제1백화점 참관 ◦ 교예공연(서커스) 관람 ◦ 북측 준비위주최, 고별연회(옥류관)
'92. 9. 6	오 전 오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일성 면담 및 오찬 ◦ 평양출발(14:30) ◦ 판문점 통과(17:35)

3. 접촉교류시 유의사항

남북교류행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 내실있는 행사진행과 함께 사석에서 이루어지는 언행까지도 세심함 배려가 있어야 한다.

북한인사와 대화시 정치적인 내용을 화제로 삼는 것은 불필요한 논쟁을 유발시킬 수 있어 가급적 피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을 다루거나 상호 이질화가 심한 대화주제 보다는 남북한 세시풍속, 일반적인 신변잡기에 관한 것 등 공통의 화제를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외에도 지나친 영어표현을 쓰다든지, 북한의 경제난에 대해서 언급하며 우리의 경제적 여유를 자랑한다든지 하는 과시성 언행도 삼가하는 것이 좋다.

또한 북한측 인사들은 교류상대방, 남북한 관계 등에 대한 많은 정보를 사전에 습득하고 나오는 경향이 있다.

특히 남북정세와 북한의 입장 등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며 우리의 의견을 물어오거나 비판을 서슴치 않기도 한다. 이런 때를 대비하여 통일방안이나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 등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우리도 가능한 충분한 사전지식을 습득해 둘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북한인사들은 남북교류행사가 사전에 우리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매우 꺼리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보도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불참하기도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우리언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기인한 것으로, 북한은 북한과 관련된 우리 언론의 보도에 대해 남한당국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공표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북한과 남북교류행사를 개최하기로 협의한 사항을 사전 공개하는 문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제 III 장 남북교류협력 추진실태

1. 학술분야
2. 문화예술분야
3. 종교분야
4. 체육분야
5. 언론·출판분야

제 III 장 남북교류협력 추진실태

1. 학술분야

가. 추진실태

(1) 개 황

1989년 6월 『남북교류협력에관한지침』 제정이후 1994년 11월까지의 학술분야 북한주민접촉신청은 322건으로 298건이 승인되어 이중 69건이 성사되었다.

남북한 왕래교류로는 제2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세미나와 제3차 평양세미나 등 4건이 이루어졌다.

학술분야 북한주민접촉신청 현황

1989. 6.12~1994. 11.30, (건)

구 분	신 청	승 인	성 사
1989~1991	163	152	40
1992	87	80	13
1993	41	40	9
1994	31	26	7
계	322	298	69

그러나 1991년 8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한민족 철학자 대회」가 성사직전에 무산되었으며, 1993년 10월 서울에서 개최키로 한 제5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세미나가 연기되는 등 남북학술교류는 제3국에서의 교류를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 학자들도 제3국을 통한 학술 교류

추진 방법을 모색해 왔으며, 지역적으로는 중국지역에서 추진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는 중국 연변지역 교포학자·단체들의 과거 북한과의 교류경험과 지리적 근접성 등을 활용하여 북한측을 남북학술교류의 장으로 쉽게 이끌어 내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연변지역의 교포 학술단체와 자매결연·연구원 상호교환 등으로 유대를 강화하면서 보다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학술교류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학술분야 남북한 왕래현황

행 사 명	주 최	참가자수	비 고
제2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 세미나 ('91.11.25~29, 서울)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서울 세미나 실행위원회	남한: - 북한:15	북한여성계 인사의 최초 남한방문
평양동북아경제포럼 ('92. 4.28~5. 4, 평양)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북) 동아시아경제연구원(미) 평양국제회의 일본실행위원회(일)	남한:18 북한:47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 구상안에 대한 토론 및 현지 시찰
제3차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평양세미나 ('92. 9. 1~6, 평양)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평양 세미나 실행위원회	남한:30 북한:-	남한여성계 인사의 최초 북한 방문
일본의 전후처리문제에 관한 국제토론회 ('93.11. 6~9, 평양)	중군위안부 및 태평양 전쟁 피해자 보상 대책위원회(북)	남한: 2 북한:11	중군위안부 피해보상 문제 협의

(2) 분야별 추진동향

① 한국학

이 분야의 남북교류는 남·북한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한국학 연구학자들이 모여 언어·역사·철학 등 한국학에 관한 다방면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대규모 종합학술회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 류 현 황

행 사 명	주 최	참가자수	비 고
제3차 조선학국제 학술토론회 (’90. 8. 2~5, 오사카)	오사카아세아연구소, 북경대 조선문화연구소	남한:145 북한: 11	북한학자 160여명 참석 예정이었으나 11명만 참석
구주한국학회 제15차 학술회의 (’91. 3.22~26, 프랑스 듀르당)	구주한국학회	남한 : 15 북한 : 3	북한은 제13차 런던회의(’89)부터 참가
고려학 소장학자 학술토론회 (’91. 7. 29~31, 연길시)	국제고려학회, 길림성 사회과학원	남한 : 75 북한 : 12	조국의 평화와 민족통일을 위한 남북학술토론회 제의
조선학국제학술토론회 (’91. 8.12~14, 연변대학)	연변대학	남한 : 45 북한 : 3	남북한 어문학 교류 및 독립운동사 연구 제의
제4차 조선학국제 학술토론회 (’92. 8.20~22, 북경)	북경대 조선문화연구소, 대판경범대 아세아 연구소	남한 : 90 북한 : 29	국제고려학회 가입문제 등 논의

② 역 사

역사분야는 타분야에 비해 비교적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로서, 특히 남북한간의 공동의 관심사인 고대사부분을 중심

으로 학술회의에서부터 만주일원의 고구려유적 공동답사, 러시아 발해유적 발굴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교 류 현 황

행 사 명	주 최	참가자수	비 고
아시아사학회 창립총회 (’90. 3.15~18, 일본)	아시아사학회 창립 위원회	남한 : 3 북한 : 2	남·북한, 일본, 중국이 참가하는 아시아사학회 창립
제2차 아시아사학회 (’91. 5.20~28, 길림성)	길림성고고연구소, 길림성사회과학학회	남한 : 16 북한 : 2	고구려유적 공동 답사
동북아 조선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 세미나 (’93. 4.15~17, 연변대학)	경희대 아시아·태평 양지역연구소, 연변대 동북아 정치 연구소	남한 : 11 북한 : 4	언어·풍속 등 민족 문화 관련 학술토의
러시아연해주발해유적발굴 (’93. 5.27~6.13, 러시아 우스리스크시)	대륙연구소, 러시아 극동역사연구소	남한 : 3 북한 : 5	러시아 발해유적 발굴
고구려문화 국제학술회의 (’93. 8.11~14, 집안시)	연변대 중국조선족 연구회	남한 : 7 북한 : 5	무용총 등 집안일 대 고구려유적 답 사 및 학술회의

③ 경 제

경제분야는 동북아지역의 경제권 형성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1992년 4월 28일부터 5월 4일간 평양에서 개최된 「동북아경제포럼」에 우리측 관계전문가 18명의 방북을 허용하는 등 두만강유역 개발과 관련한 학술교류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

교 류 현 황

행 사 명	주 최	참가지수	비 고
제3차 동북아경제공동체 국제심포지움 (’90.10. 9~12, 북경)	국민대 중국문제연구소, 중국 아·태경제연구소	남한 : 5 북한 : 3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에 관한 논의
동북아지역 경제발전과 협력회의 (’91. 1.28~2. 1, 장춘·연길)	길림대학	남한 : 13 북한 : 8	동북아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연구성과 교류 등 합의
동북아경제협력민간협회 창립총회 (’91. 7.17~19, 북경)	동북아경제공동체 추진연구회	남한 : 1 북한 : 2	동북아경제협력 민간협회 총본부 서울유치 등 협의
동북아경제기술발전 국제 연토회 (’91. 8.29~31, 장춘)	중국 아·태연구회, UNDP, 하와이 동서문화 센터	남한 : 19 북한 : 3	두만강유역 동북아 경제기술 발전을 위한 국가간 협력
동북아국제협력세미나 (’91. 8.27~9.1, 심양)	요녕성	남한 : 21 북한 : 4	동북아지역간 경제협력방안 토의
환동해경제권 국제 심포 지움 (’91.11.22, 오오사카)	아사히신문사	남한 : 1 북한 : 2	남북한·일본·소련· 중국의 경제교류 협의 두만강개발계획 논의
동북아경제협력 국제학 술회의 (’92. 2. 3~5, 샷쁘르)	NIRA, NPRARC	남한 : 2 북한 : 2	동북아경제협력 문제 논의
동북아지역개발 비교연구 국제학술회의 (’92. 7.10~12, 연변)	연변대 동북아경제 연구소	남한 : 21 북한 : 5	동회회의 연례개최 및 관계자료 교환협의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협력 실무안내

행 사 명	주 최	참가자수	비 고
동북아지역경제협력포럼 (’92. 8.25~28, 블라디 보스톡)	하와이·태연연구소, 구소련사회과학원블 라디보스톡 해양 연구소	남한 : 10 북한 : 4	자유무역지대 설치 및 두만강유역 개발 등
동북아경제협력민간협 회 제2차 전체이사회 (’93. 4.18~20, 천진)	동북아경제협력민간 협회	남한 : 3 북한 : 3	황해 및 발해지역 자원공동개발, 나진·청진·선봉항 개발 연구과제 채택, 제3차 이사회 평양 개최 제의
동북아세아지역 경제발 전과 경제협력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94. 7.16~25, 연길)	길림대학	남한 : 6 북한 : 4	두만강개발 논의

④ 통일안보

이 분야는 한반도 평화유지 방안과 통일문제에 관해 남·북한 및 주
변국 전문가 의견을 교환하는 학술회의 성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분야와 함께 북한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분야이나
체제선전이나 정치적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어, 교류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우선 순수 학술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이 무
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제기되고 있다.

교 류 현 황

행 사 명	주 회	참가자수	비 고
제2차 아세아·태평양지역 대화·평화·협력에 관한 국제 학술회의 (’90. 9. 4~6, 블라디보스톡)	소련과학아카데미	남한 : 3 북한 : 5	아세아태평양 지역 정치·경제 문제 논의
동북아 안보회의 (’91. 3. 23~25, 북경)	미조지아공대 전략 연구소, 중국세계관찰연구소	남한 : 3 북한 : 3	남북한 경제 협력 및 한반도 안보문제 토의
동북아시아 국제회의 (’91. 5. 27~29, 동경)	요미우리신문사, 조지워싱턴대학 중 소연구소	남한 : 3 북한 : 4	군축 문제 논의
제7회 한반도 통일문제에 관한 국제학술심포지움 (’91. 5. 31~6. 2, 동경)	환태평양연구소, 아사히신문사	남한 : 3 북한 : 4	군축 문제 논의
제1차 북한·미국 학술회의 (’91. 6. 3~7, 하와이)	하와이대 한국연구소	남한 : 3 북한 : 3	군축 문제 논의
제8회 한반도통일문제에 관한 국제학술심포지움 (’92. 5. 17~18, 동경)	환태평양연구소, 아사히신문사	남한 : 11 북한 : 3	한반도통일문제 에 대해 토론하 는 연례적 국제 학술 심포지움
북태평양 안보협력 회의 (’92. 5. 22~23, 오타와)	캐나다평화안보연구소	남한 : 2 북한 : 2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비통 제 및 신뢰구축 문제 논의
하와이 6개국 국제학술회의 (’92. 6. 23~25, 하와이)	Pacific Forum, CSIS(국제전략문제 연구소)	남한 : 2 북한 : 3	한반도 통일문제 논의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협력 실무안내

행 사 명	주 최	참가자수	비 고
'92 상해유엔 군축회의 ('92. 8.17~19, 상해)	UN군축국	남한 : 3 북한 : 2	화학무기군축 및 다자간 안보협력 논의
제2회 한반도 통일문제 심포지움 ('93. 4.16~17, 버클리대학)	버클리대 한인 학생회	남한 : 5 북한 : 4	핵·군축 등 남북 통일문제 토론
제1차 동아시아 차세대 정치인 회의 ('94. 8. 3~8,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국민전선	남한 : 7 북한 : 4	동아시아의 평화 와 안전·번영을 위한 협력방안 논의

⑤ 과학기술

비정치적인 분야로서 북한측에서는 다른분야에 비해 비교적 많은 인원이 참가하는 경향이 있다.

교 류 현 황

행 사 명	주 최	참가자수	비 고
현대물리학 국제워크샵 ('90. 7.16~18, 북경)	연변대학	남한 : 18 북한 : 5	물리학분야 학술 교류
제11차 세계자동제어연맹 총회 ('90. 8.13~16, 소련)	세계자동제어연맹	남한 : 2 북한 : 3	자동제어분야 학 술교류
제6차 동해 동지나해 해양 학술회의 ('91. 4.22~27, 후쿠오카)	일본구주대학	남한 : 25 북한 : 3	해양학분야 학술 교류

행 사 명	주 최	참가자수	비 고
'91 국제과학기술학술대회 ('91. 8.19~24, 연길시)	조선족과학자협회, 연변주과학기술협회	남한 : 87 북한 : 45	세계한민족과학 기술자 공동협의 체 구성, '92 국 제과학기술학술 대회 평양개최 등 제의
'91 전자·정보·통신 국제 학술대회 ('91. 8.21~23, 연길시)	연변대학	남한 : 44 북한 : 10	'92전자·정보·통 신 국제학술회의 평양개최 제의
'94 KOREAN 컴퓨터처 리 국제학술대회 ('94. 8. 5~10, 연길시)	국어정보학회, 연변과학기술협회	남한 : 24 북한 : 25	한글정보처리에 관한 학술발표 및 관련기기전시

⑥ 언 어

언어분야는 남북한 언어이질화와 관련하여 남북한 학자들사이에 관심이 높은 분야이다.

주로 한국학 관련 학술회의의 언어분과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서울대 이현복 교수는 폴란드 바르샤바대학에서 북한 혜산 사범대 로길용 교수와 함께 남북한 언어차이에 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남북한 언어 비교연구”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국제고려학회 주최로 1993년 8월 북경에서 개최된 「통일을 지향하는 언어와 철학」세미나에서 남북한 언어학자들간의 교류가 이루어진 바 있다.

⑦ 기 타

현재까지 남북학술교류의 성사사례가 많은 편은 아니나, 우리학계의 대북 교류의 관심영역은 한의학, 여성학, 환경, 생태계, 기상, 지역개발 등으로 점차 넓어지고 있어 향후 여러 전문분야에서 다양한 대북교류 추진시도가 예상되고 있다.

나. 교류방향

남북학술교류는 한국학, 역사, 경제, 통일안보 분야 등을 중심으로 제3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행사를 통해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세미나 등 몇 건을 제외하고는 남북한 왕래교류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제3국개최 학술회의에 북한의 참여를 계속적으로 유도해내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한 학자들의 상호왕래와 공동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직접적인 교류의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향후 남북학술교류가 남북상호 이해증진과 남북관계 개선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교류주체면에서 대학·연구기관·각종학회 등 권위있는 민간학술단체의 주도하에 질서있게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학문영역면에서는 순수 학문분야의 교류협력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점차 세부 전문분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교류의 접근방식면에서는 자료·정보교환→분야별 학술회의 공동개최→공동연구·편찬사업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2. 문화예술분야

가. 추진실태

(1) 개 황

1989년 6월 『남북교류협력에관한지침』 제정이후 1994년 11월까지의 북한주민접촉신청은 신청 173건에 139건이 승인되었으며, 이 중 19건의 접촉이 성사되었다.

남북왕래 교류로는 「'90 송년통일전통음악회」와 「평양범민족통일음악회」 2건만이 이루어졌다.

문화예술분야 북한주민접촉신청 현황

1989. 6.12~1994.11.30, (건)

구 분	신 청	승 인	성 사
1989~1991	96	67	12
1992	39	39	2
1993	19	18	2
1994	19	15	3
계	173	139	19

남북문화교류 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것은 북한측의 소극적인 자세, 문화·예술에 대한 남북간 기본인식상의 상충, 대규모의 인원·비용·시간 등이 소요되는 공연물로서의 특성 등으로 말미암아 교류가 정례화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류의 폭도 넓혀나가지 못하였다는 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3국에서 이루어진 행사는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우리동포 밀집 지역에서 해외동포 사회의 참여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그 특징이다.

남북국악인 교환공연 현황

행 사 명	내 용
평양범민족 통일음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간 : 1990.10.14~10.24(10박11일) ○ 장 소 : 2.8문화회관, 동평양대극장 ○ 방 복 자 : 서울전통음악연주단 대표 황병기 등 17명 ○ 공연내용 : 평시조 '마음이 지척이면' 등
'90송년통일 전통음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간 : 1990.12. 8~12.13(5박 6일) ○ 장 소 : 예술의 전당, 국립극장 ○ 방 문 자 : 평양민족음악단 단장 성동춘 등 33명 ○ 공연내용 : 민요, 전통악기 독주 등

제3국개최 남북문화예술교류 현황

행 사 명	내 용
뉴욕 남북 영 화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0.10.10~10.14 ○ 장소 : 뉴욕 ○ 참가 : 남측 31명, 북측 8명 ○ 내용 : 남·북한 영화 각 7편 시사회 개최
환동해국제 예 술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1. 5. 2~ 5. 5 ○ 장소 : 쓰루가 ○ 참가 : 남측 52명, 북측 60명 ○ 내용 : 중앙국립관현악단과 평양음악무용단의 합동공연
남북코리아 서 화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1. 5.27~ 5.29 ○ 장소 : 북경 ○ 참가 : 남측 28명, 북측 10명 ○ 내용 : 남한작품 49점, 북한작품 27점 합동전시

행 사 명	내 용
'91 남북통 일전통미용 풍 속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1. 8.17~ 8.18 ◦ 장소 : 사할린 ◦ 참가 : 남측 120명, 북측 80명 ◦ 내용 : 농악·진도북춤 등 전통예술 합동공연
'92 통 일 예 술 축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2. 8.16 ◦ 장소 : 사할린 ◦ 참가 : 남측 78명, 북측 42명 ◦ 내용 : 남한의 대중가요와 북한의 전통예술단 합동공연
코 리 아 통 일 미 술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3.10.12~10.24 ◦ 장소 : 동경·오오사까 ◦ 참가 : 남측 16명, 북측 3명 ◦ 내용 : 미술작품 101점 전시 (남 37점, 북 30점, 조총련 34점)
뉴코리아나 사 진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 1994. 9.26~9.30 ◦ 장소 : 연길시 ◦ 참가 : 남측 5명, 북측 3명 ◦ 내용 : 풍경사진 216점 전시 (남·북한 각 85점, 조선족 46점)

(2) 장르별 추진동향

① 문 학

문학분야는 한국문인협회, 한국펜클럽, 한국시인협회 등 국내 권위있는 문학단체들이 남북문학인 교류를 제의하는 등 남북문학교류를 시도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성사된 적은 없다.

② 음 악

「범민족통일음악회」('90.10, 평양)와 「송년통일전통음악회」

(’90.12, 서울)를 비롯하여, 「환동해 국제예술제」(’91.5, 일본) 등이 성사되어 다른 장르보다 비교적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진 바 있다.

평양국립교향악단 초청, 남북교향악단 교환공연, 어린이 음악회에 북한어린이 초청 등과 같은 이벤트 행사가 언론사를 중심으로 시도 되기도 하였다.

③ 미 술

「남북코리아서화전」(’91.5, 북경), 「코리아통일미술전」(’93.10, 동경·오오사까) 등의 남북미술작품 전시회가 성사되었으며, 최근에는 물자교역차원에서 북한미술작품의 반입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수채화 작품전시, 북한 명산풍경화 제작 등이 추진되었으며, 특히 한국미술협회는 「조형예술 아·태총회」(’90.6)에 북한미술인 초청 및 미술교류 제의 등 남북미술교류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④ 연 극

연극 「게사니」시연회에 북한인 초청(민중극단), 창극 「아리랑」 북한 공연(동아일보) 등이 모색되었으나 전체적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아세아 전통연극에 관한 심포지움」(’91.12, 북경)에서 최초의 남북연극인 접촉이 이루어진 바 있다.

⑤ 영 화

최초의 남북영화교류라 할 수 있는 「뉴욕남북영화제」(’90.10)를 계기로 대중필름, 김호선영화, 다남홍업, 성일시네마트 등 영화제작사가 중심이 되어 주로 미주지역 교포 영화인들의 중개로 남북영화교류가 활발히 모색되고 있다.

「임꺼정」(김호선영화), 「장길산」(대중필름) 등의 남북합작영화 제작, 백두산·금강산기록영화 제작, 제37회 「아·태영화제」 북한초청 등이 시도된 바 있다.

⑥ 민 속

1991년 8월 사할린에서 남북합동으로 「'91 남북통일전통미용문화 풍속제」가 개최되어 진도북춤·농악 등이 공연되었으며, 한국부인회는 북측에 남북 토속음식경진대회를 제의, 방북초청장을 입수하기도 하였다.

이외에도 남북전통공예자료 교환(전통공예기능보존협의회), 남북한 수공예품 교환전시(여성신문사), 어촌민속 공동조사(부산수산대) 등이 시도된 바 있다.

이 분야에서는 앞으로 생활문화 중심의 남북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간다면 남북간의 문화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리라 기대되고 있다.

⑦ 대중음악

1985년 제1차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교환시 우리 대중연예인들이 평양에서 공연을 한 바 있으며, 1992년 8월 MBC 예술단과 대중인기가수들이 북한 공연단과 합동으로 사할린동포 위문행사인 「통일 예술제」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또한, 잘 알려져 있는 북한의 보천보전자악단과 평양왕재산경음악단의 초청공연에 국내 이벤트사들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⑧ 사 진

최초의 남북사진교류인 「뉴코리아나 사진전」('94. 9, 연길)이 개최되어 한국사진작가협회와 조선사진가동맹간에 교류가 이루어진 바 있다.

그밖에도 산악사진교류, 직업사진가교류 등이 시도되었으나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내지는 못하고 있다.

⑨ 기 타

위에서 소개한 분야 이외에도 「'92춤의 해」 행사에 북한초청(한국무용협회), 남북실생활 의류전시회 등 무용·의상분야의 교류로 점차 교류영역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 성사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나. 교류방향

남북분단으로 인한 상호간 이념적 차이로 심화되어온 이질감의 극복과 민족동질성의 회복뿐 아니라 통일후에 예상되는 문화·심리적 갈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남북문화교류협력이 하루 빨리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또한 교류가능 영역도 문화관련 연구·저작, 음악, 미술 등 각종 예술적 창작물의 공동전시, 영화·방송프로그램 등의 공동제작과 방영 등 실로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분야는 남북간 이질적인 체제의 정치·사상성이 깊이 내재해 있을 뿐 아니라,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도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다른 분야의 교류보다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더우기 북한은 체제유지적 차원에서 남북문화교류협력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한 채, 체제선전에 도움이 될 사안이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할 만한 사안 등에 한해 선별적으로 응해 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남북문화교류가 민족문화의 동질성 회복과 문화공동체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단체가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교류사안을 선택하여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단계적·점진적으로 질서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종교분야

가. 추진실태

(1) 개 황

1989년 6월 『남북교류협력에관한지침』 제정 이후 1994년 11월까지 종교분야의 북한주민접촉신청건수는 147건으로 이중 117건이 승인되어 26건이 성사되었다.

남북한간의 종교교류는 1989년 이대경(재일교포), 1991년 곽선희(소망교회), 1992년 권호경(KNCC 총무) 목사 등 일부 기독교계 인사들의 북한방문이 이루어진 가운데 주로 미국·일본 등 제3국에서의 종교행사 공동참가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종교분야 북한주민접촉신청 현황

1989. 6.12~1994.11.30, (건)

구 분	신 청	승 인	성 사
1989~1991	66	57	15
1992	38	30	7
1993	19	16	1
1994	24	14	3
계	147	117	26

(2) 종교별 추진동향

① 개신교

개신교계의 각 교단이나 연합기관들이 종교교류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다.

남북한 기독교인의 교류는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주선으로 1986년 9월 20일 「제1차 글리온회의」에서 남한의 한국교회협의회 대표단과

북한의 조선기독교도연맹 대표단과의 접촉으로 계기가 마련되었다.

글리온회의는 1988년과 1990년에도 계속 개최되어 「2차 글리온회의」('88.11)에서는 1995년을 '통일희년'으로 선포하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였으며, 「3차 글리온회의」('90.12)에서는 희년을 준비하기 위한 공동사업계획을 합의하기도 하였다.

글리온 모임 이후 재일 대한기독교회 총회 주관으로 「조국의 평화통일과 선교에 관한 기독교인 동경회의」가 개최되어 남북한 대표와 해외교포 기독교인들이 모여 '글리온 선언'을 재확인하고 남북한간 기독교인 교류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이 모임에서도 북한이 매년 정치적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실질적인 종교교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들어서는 각종 종교기념식에 북한기독교 인사 초청, 남북 공동 예배 및 기도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남북기독교 교류를 시도하고 있고 대북선교 차원의 활동도 전개하고 있다.

② 천주교

천주교의 남북교류는 교황청을 통한 간접교류이거나 외국인 신부의 한국 출신 신부들의 개인적 방북사례가 있었지만 남북의 천주교 대표들간의 공식적인 접촉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천주교중앙위원회에서 1989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44회 「세계 성체대회」에 북한 천주교신자를 초청하였으나 무산된 바 있다.

③ 불 교

1988년 7월 남한출신 승려로는 처음으로 하와이에 거주하는 대원스님이 북한을 방문한 이후, 우리 불교계에서도 북한 불교계와 교류를 시도하였지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한불교의 대표적 단체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서 1989년 「한강연등대법회」에 조선불교도연맹 대표를 초청하는 등 수차례 남북불교교류를 시도하였으나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1991년 10월 미국 LA에서 한민족 불교교류추진 미주불교협의회

가 주선한 「남북불교대표자회의」를 통해 남북한 불교인들의 접촉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이 회의에서도 북한측은 ‘남한의 핵무기 철수’, ‘보안법 철폐’ 등 정치적 선결조건을 내세운 불교교류를 제의함으로써 남북한간의 견해차이만 노출하고 별다른 진전을 거두지 못하였으며, 1993년 이후에는 핵문제로 인한 남북관계의 경색 등으로 인하여 불교계의 교류시도가 거의 중단된 상태에 머물고 있다.

④ 기 타

민족종교인 천도교와 대종교도 북한과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북한의 반응이 비교적 적극적인 편이다.

1989년 11월 남한의 천도교측은 「천일기념식」에 북한의 천도교인사를 초청키로 한 것을 계기로 천도교교류를 추진하였다.

최근에는 남북의 천도교 대표가 북경에서 접촉하여 「동학혁명 100주년기념사업」을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나 북한 핵문제로 인한 경색된 남북관계의 영향으로 실질적인 교류가 성사되지 못하였다.

대종교측도 주로 민족적 차원에서 단군사상을 앙양하기 위해 중국 연변의 해외동포사회를 매개로 북한측과 교류를 시도하고 있다.

나. 교류방향

남북한 종교교류는 남북화해와 민족의 동질성 회복 및 신뢰구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교차원에서 순수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종교교류를 통일전선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태도를 견지하여 순수한 종교교류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종교교류가 남북관계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종교교류를 직접 추진하고자 하는 종교인들도 아래 몇가지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첫째, 북한종교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교류에 수반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사전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성급하고 경쟁적인 대북 종교교류 자세를 지양하고, 여러 교단이나 종파간에 합의를 이루고 대표성을 가진 주체가 일관되고 질서있게 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북한의 정치적 접근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종래에 북한의 종교교류를 정치선전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사례가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에 대한 사전 대처가 필요하다.

4. 체육분야

가. 추진실태

(1) 개 황

1989년 6월 『남북교류협력에관한지침』 제정이후 1994년 11월까지의 체육분야 북한주민접촉신청은 총 81건으로 이중 74건이 승인되었으며, 14건이 성사되었다.

동기간 중 남북왕래교류로는 「남북통일축구대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평가전」 등 5건이 이루어졌다.

체육분야 북한주민접촉신청 현황

1989. 6.12~1994.11.30, (건)

구 분	신 청	승 인	성 사
1989~1991	39	38	7
1992	16	13	2
1993	15	13	3
1994	11	10	2
계	81	74	14

남북체육교류는 1990년 「남북통일축구대회」, 1991년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및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등으로 활기를 띠기도 하였으나, 북한이 북한유도선수 이창수의 망명('91. 8)을 구실삼아 기함의된 체육회담을 일방적으로 전면 중단시킨 이후에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1993년 10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7차 동아시아 경기대회 협의회」 회의에 KOC 명예총무 등 6명이 참석하는 등 국제기구를 통해 순수 민간차원에서의 접촉은 이루어지고 있다.

(2) 주요 추진동향

① 남북통일축구대회

분단 45년만의 첫 남북체육교류 행사인 「남북통일축구대회」는 1990년 10월 서울·평양간 교환경기로 개최되었다.

북한을 개방과 변화로 유도하는 차원에서 남북체육교류를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아래 1990년 9월 남북체육장관회담 및 실무회담 등 수차례 접촉을 통해 1990년 9월 28일 「남북통일축구대회」 개최에 대해 정식 합의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평양대회는 1990년 10월 11일 5.1경기장에서, 서울대회는 1990년 10월 23일 잠실주경기장에서 개최되었다.

남북통일축구대회 개최현황

행 사 명	내 용
남 북 통 일 축 구 대 회 평 양 경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및 장소 : 1990.10.9~13(4박5일), 5.1경기장 ○ 방문자 규모 : 총 76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수단 : 이재명 단장 등 45명(임원7, 남20, 여18) - 인솔단 : 정동성 체육부장관 등 11명 - 보도진 : 20명 ○ 방문경로 : 북경→평양(조선민항)→판문점→서울(육로) ※ '90 북경 아시안게임 및 제1회 다이내스티컵 참가 후 곧바로 평양으로 출발 ○ 경기결과 : 북측 승리(2:1)
남 북 통 일 축 구 대 회 서 울 경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간 및 장소 : 1990.10.21~25(4박5일), 잠실주경기장 ○ 방문자 규모 : 총 78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수단 : 이한복 단장 등 45명(임원7, 남20, 여18) - 인솔단 : 김유순 조선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등 11명 - 보도진 : 22명 ○ 방문경로 : 판문점 경유 ○ 경기결과 : 남측 승리(1:0)

②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남과 북은 「남북통일축구대회」를 개최하여 남북한간 체육교류를 실현한 이후, 동 대회에서 고조된 남북체육교류의 열망을 수렴하기 위하여 1990년 11월 29일부터 1991년 2월 12일까지 남한측 장충식 수석대표와 북한측 김형직 단장 등 양측 체육회담 대표들이 4차례의 남북체육회담을 개최한 결과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남북이 단일팀을 구성하여 참가하기로 합의하였다.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관련 주요 합의사항

- 선수선발(출전선수)
 - 남측 : 남자 6명, 여자 5명(11명)
 - 북측 : 남자 6명, 여자 5명(11명)
- 선수훈련
 - 장소 : 일본
 - 기간 : 1991. 3.26~4.23
 - 방법 : 합동훈련
- 선수단 구성
 - 단장 : 북측
 - 인원 : 남북 각 28명(총 56명)
- 소요경비
 - 선수훈련 및 대회기간중 소요되는 제경비는 남북 합동부담
- 필요장비 문제
 - 단복은 북측, 운동복 일체는 남측 준비
 - 개인지참 용구(탁구라켓등)는 남북 각각 확보
 - 공동사용 용구는 공동구입

탁구종목에서는 1991년 2월 2차에 걸친 실무위원회를 통해 단일팀 구성 및 참가에 필요한 세부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를 이루어냄으로써, 1963년 동경올림픽 단일팀 참가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체육회담을 개최한 이래 최초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1년 3월 16일 대한탁구협회 회장을 협력사업자로 하여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의 남북단일팀 구성 및 참가를 협력사업으로 승인하고 우리 선수단의 합동훈련 등 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키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사업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및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최초의 남북간 협력사업으로서 우리 정부의 대북한 교류협력 정책이 구체적 사업으로 결실을 맺었다는데 그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③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

1990년~1991년 남북체육회담을 통해 합의한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 단일팀 구성에 관한 실무문제 협의를 위해 1991년 2월 2차에 걸쳐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선수선발 및 동 대회 단일팀 구성·참가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1991년 4월 30일 제1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개최하여 대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협력사업자로 승인함과 아울러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참가를 협력사업으로 승인하였다.

이러한 협력사업의 승인과 함께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단일팀 구성을 위한 서울·평양 평가전을 비롯한 강화훈련과 대회참가에 이르기까지의 2개월간 소요되는 경비일부를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였다.

남북단일팀은 남북선수들이 한달여의 합동훈련만 받은 후 대회에 출전, 8강에 오르는 성적을 거두어 남북교류협력에 좋은 귀감을 남겼다고 볼 수 있다.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구성관련 주요 합의사항

- 선수선발
 - 선 발 방 법 : 평가전(2회 개최)
 - 선 발 인 원 : 18명(남측 9, 북측 9)
 - 선발전 일시 : 제1차 1991. 5. 4(토) 서울, 제2차 1991. 5. 8(수)
- 선수훈련
 - 훈련장소 및 기간
 - 평 양 강화훈련 : 1991. 5.10~5.14
 - 서 울 강화훈련 : 1991. 5.16~5.20
 - 프 랑 스 강화훈련 : 1991. 5.22~5.26(남북쌍방 추후합의)
 - 뜰 롱 국제대회 참가 : 1991. 5.27~6. 4(남북쌍방 추후 합의)
 - 포 르 투갈 강화훈련 : 1991. 6. 6~6.13
 - 훈련인원 : 72명(남측 36, 북측 36)
- 선수단 구성
 - 단 장 : 남측
 - 부단장 : 북측
 - 인 원 : 남북 각 31명(62명)
- 소요경비 부담
 - 평가전 및 강화훈련 기간중 제반편의는 장소를 제공하는 측에서, 대회현지에서 소요되는 제경비는 남북이 공동으로 부담
- 결단식 및 해단식
 - 결단식 : 서울(강화훈련 직후)
 - 해단식 : 평양(대회귀환 직후)
- 필요장비등에 관한 사항
 - 단복은 북측, 운동복 및 기타 운동용품은 남측에서 준비
 - 평가전은 트레이닝복과 경기복은 장소 제공측에서 준비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 남북단일팀 주요일정

구 분	내 용	주 요 일 정
서울 평가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 문 자 : 리명성 등 70명 ○ 방문기간 : '91. 5. 6~5.9 ○ 방문경로 : 평양→판문점→서울 ○ 경기일시 및 장소 : 5. 8, 15:00~17:00, 잠실주경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측선수단 서울도착(5. 6) ○ 1차평가전(5. 7) ○ 북측선수단 평양귀환(5. 9)
평양 평가전 및 강화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 문 자 : 오완전 등 70명 ○ 방문기간 : '91. 5.10~5.16 ○ 방문경로 : 서울→판문점→평양 ○ 경기일시 및 장소 : 5.12, 15 : 00~17 : 00, 5.1경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측 선수단 평양이동(5.10) ○ 2차 평가전(5.12) ○ 우리측 선수단 일부(35명) 서울귀환(5.13)
서울 강화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 문 자 : 리명성 등 72명 ○ 방문기간 : '91. 5.17~5.21 ○ 방문경로 : 평양→판문점→서울 ○ 훈련장소 : 잠실경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강화훈련진행(5.17~5.20) ○ 코리아축구팀 결단식 및 리스본 향발(5.21) ○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 대회 출전(5.22~6.26)
평양 해단식 참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 문 자 : 장충식 등 33명 ○ 방문기간 : '91. 6.21~7.10 ○ 방문경로 : 서울→판문점→평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귀환 및 해단식 개최(6.28) ○ 우리측 선수단 서울귀환 및 환영식 개최(6.29)

나. 교류방향

우리 체육계는 체육의 비정치적인 성격을 감안하여 분단이후 장기간 심화되온 남북간 이질적 요소를 해소하고 민족화해 분위기를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남북 체육교류의 성사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고, 이에 따라 그간 1990년 「남북통일축구대회」 등 몇 건의 남북 체육교류협력이 성사될 수 있었다.

북한은 체육교류를 대내외적 정치선전이나 체제유지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면서 남한과의 체제경쟁 차원에서 접근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내부체제 강화 도모 차원에서 북한 개최가 예정된 「'95 동아시아 경기대회」 등 국제대회를 반납하고 「'94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에 불참하는 등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체육계에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가중되는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95 국제군인체육대회의 참가의사를 표명하는 등 국제대회에 선별적으로 참가할 것이 예상된다.

향후 남북한간 체육교류는 실현가능성과 북한측의 수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쉬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하에 북한을 교류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교류경험이 있는 체육행사의 부활, 종목별 교환경기 개최, 체육관계자의 상호 방문 등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남북공동 개최를 위해 북한측과 공감대를 형성, 공동 대처하는 노력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5. 언론·출판분야

가. 추진실태

(1) 개 황

1989년 6월 『남북교류협력에관한지침』 제정이후 1994년 11월까지 언론·출판분야 북한주민접촉은 신청 130건, 승인 103건이며 이중 23건이 성사되었다. 그러나 남북왕래교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언론·출판분야 북한주민접촉신청 현황

1989. 6.12~1994.11.30, (건)

구 분	신 청	승 인	성 사
1989~1991	56	43	17
1992	25	19	4
1993	14	10	·
1994	35	31	?
계	130	103	23

이처럼 언론·출판교류가 다른분야보다 교류실적이 부진한 것은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해 정보유입·유출을 차단하고 있어 일시에 대량의 정보전파가 이루어지는 속성을 갖고 있는 언론·출판의 교류에 선뜻 응하기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 분야별 추진동향

① 언론분야

남북한 언론교류는 남북언론사간에 직접교류와 같은 의미있는 교류는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여타의 남북왕래행사나 제3국개최 남북행사에 동행취재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동프로그램 제작과 교환을 조심스럽게 모색하는 등 그 범위가 점차 넓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② 출판분야

출판분야는 국내출판사들에 의한 북한도서 반입추진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리조신록’ 등과 같은 고문헌번역본의 복제출판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출판물의 국내출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남북 당국간 저작권 협의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 교류방향

남북한 언론·출판교류는 남북 상호간의 이질성을 극복하고 민족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통일 이후의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도 중요한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간 언론·출판교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남북 언론·출판교류를 추진함에 있어 남북상호 국내문제를 자극하고 남북간 긴장을 조성하여 남북교류협력 및 관계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이한 체제하에서 오는 언론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말미암아 발생할 역기능을 고려, 상업성에 기인하는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는 자세도 중요하다 하겠다.

향후 남북간 언론·출판분야의 교류는 쌍방이 수용 가능한 교류·협력방안을 발굴해 내고, 이를 점차 확대해 나가는 단계적·순차적 접근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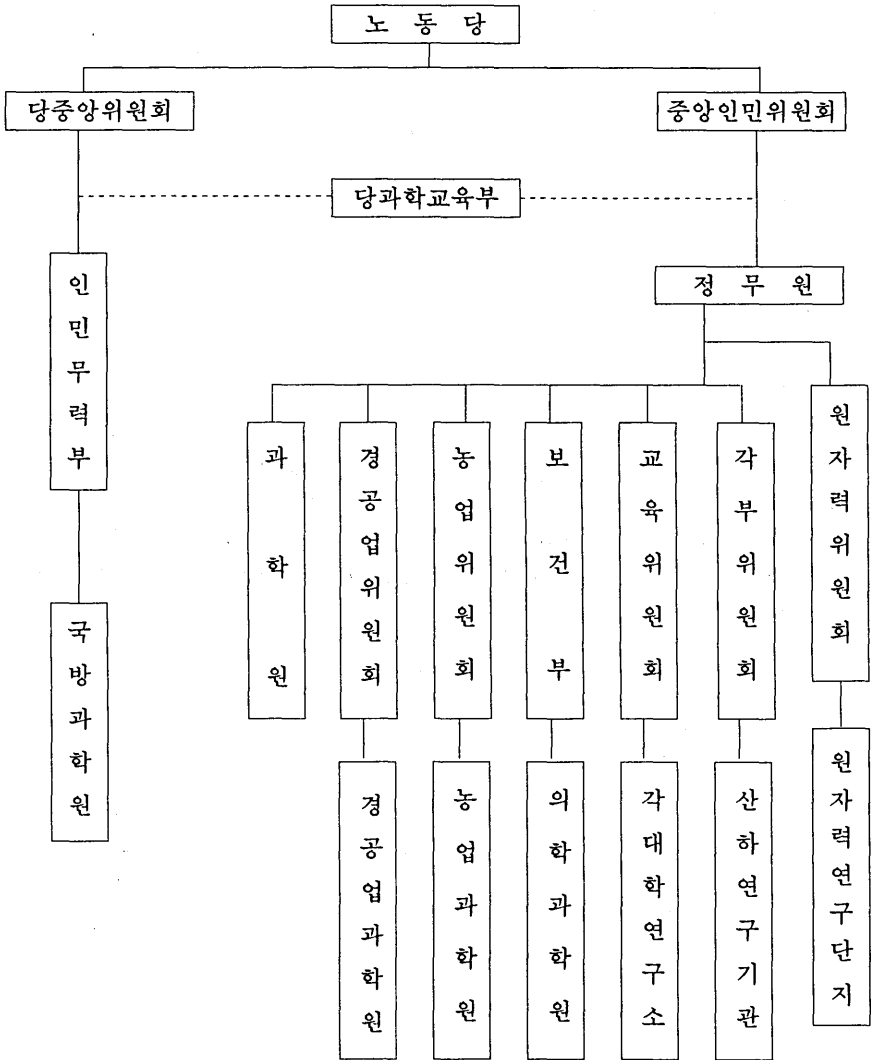
부 록

- 북한의 사회문화분야 단체·인명 현황
-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령
- 남북교류협력 관련 남북간 합의문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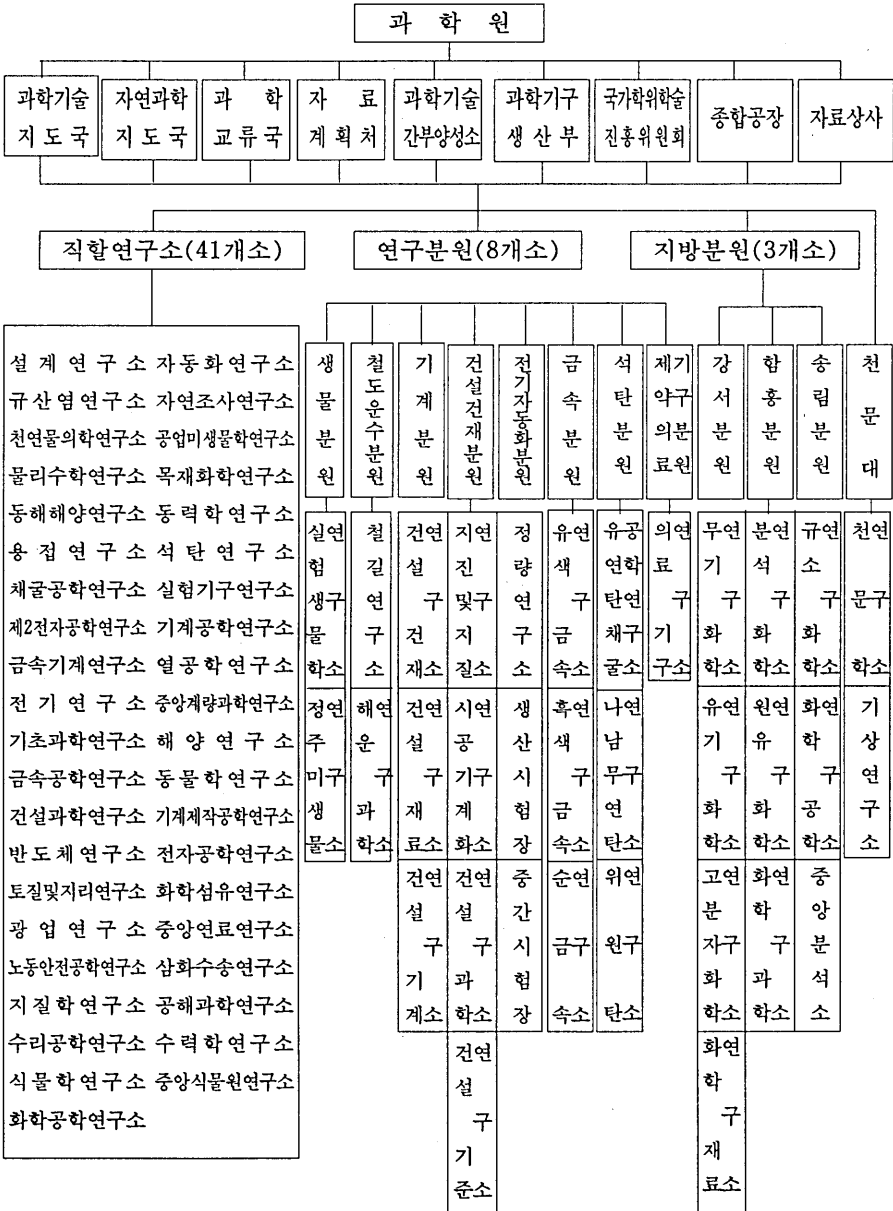
북한의 사회문화분야 단체·인명 현황

학술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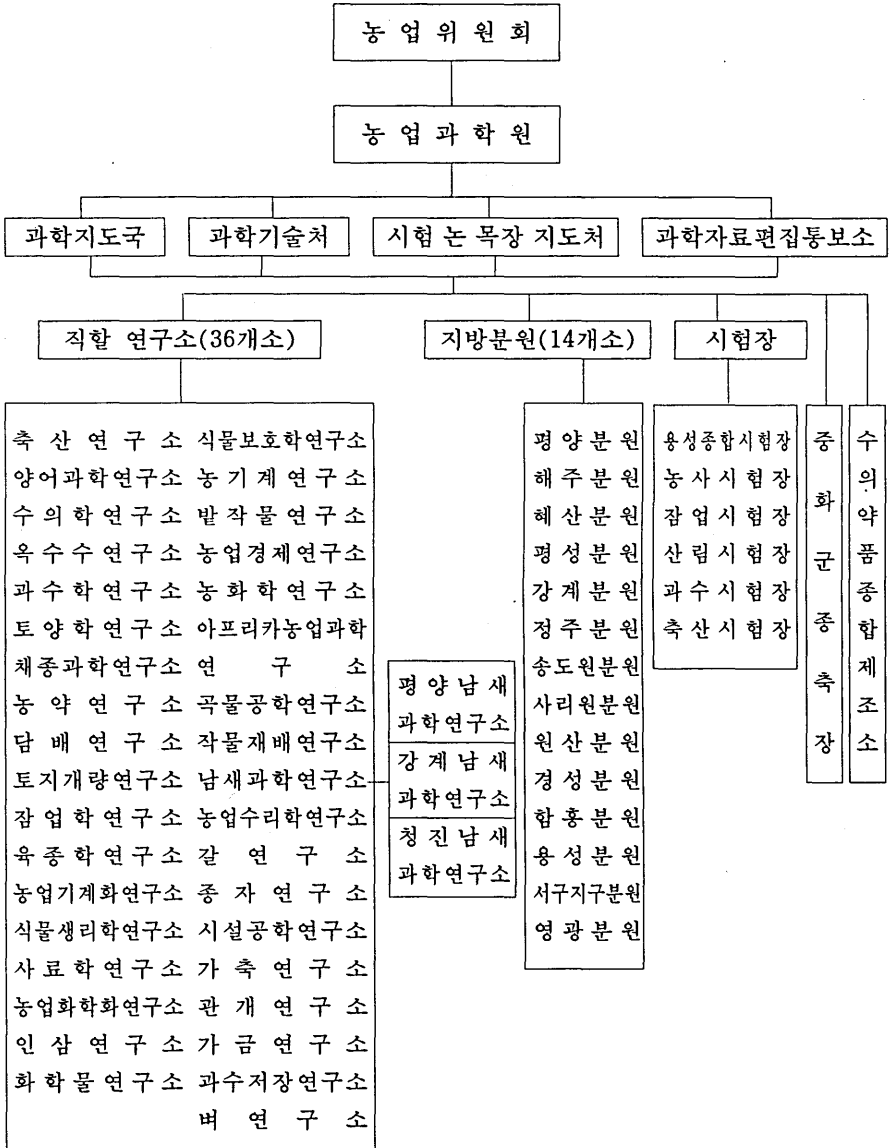
과학기술 연구기관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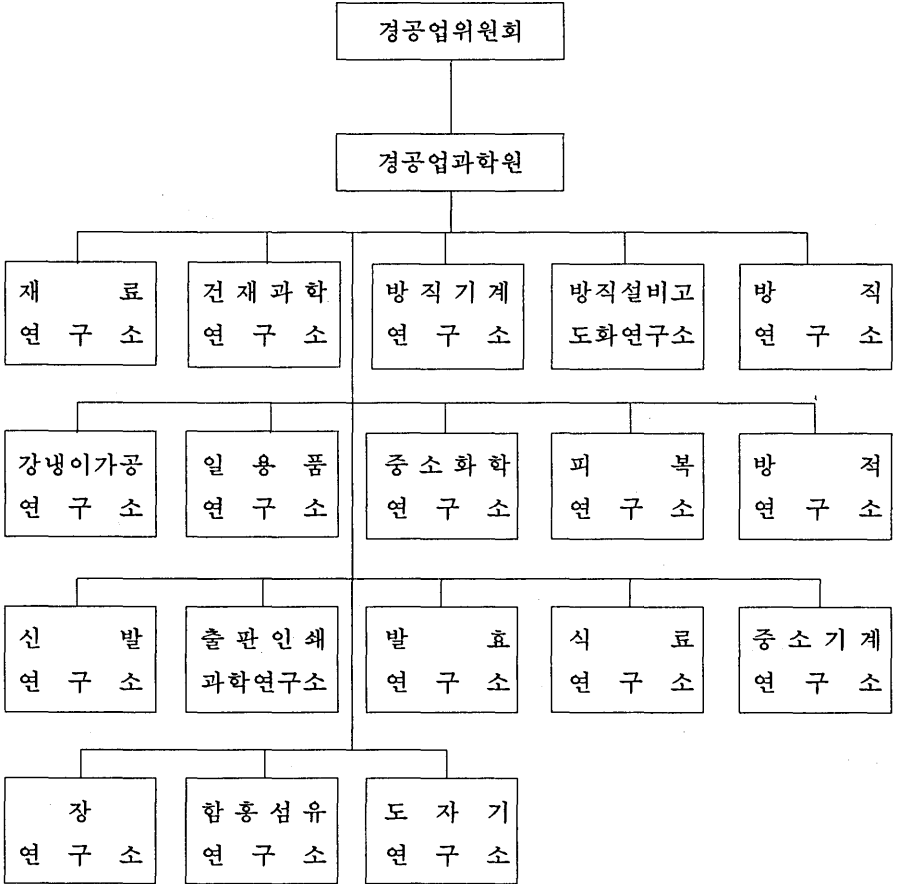
과학원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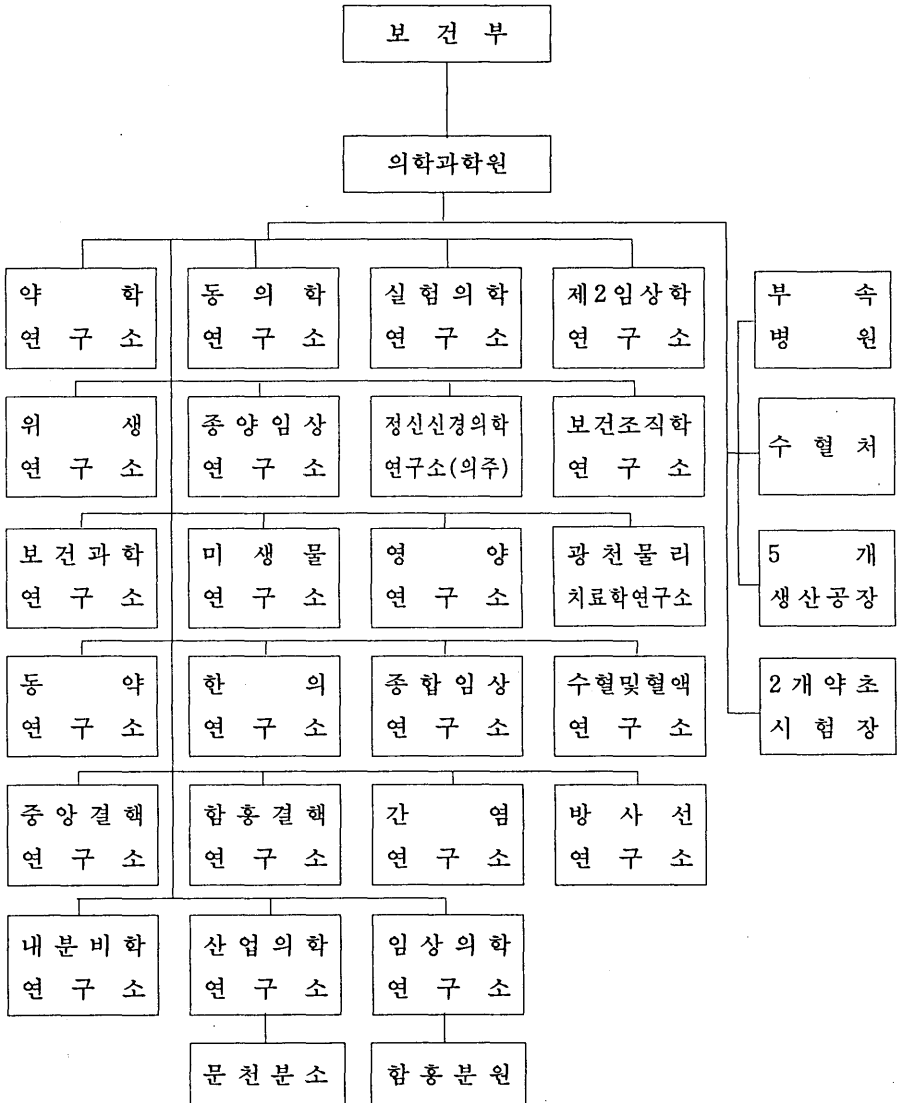
농업과학원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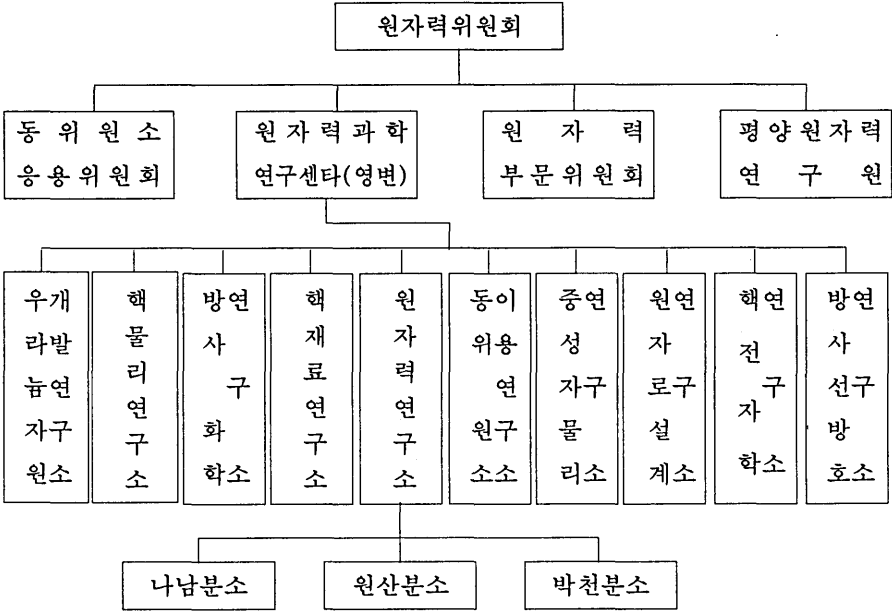
경공업과학원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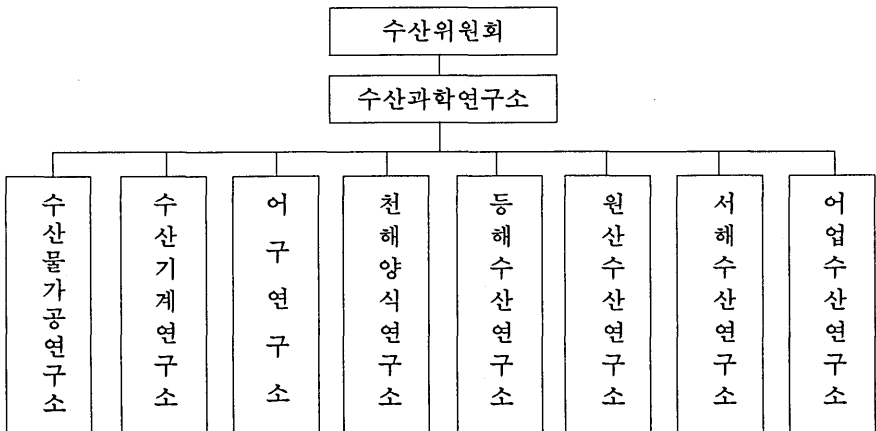
의학과학원 체계



원자력연구소 체계



수산과학연구소 체계



* 출처 : 「북한개요」, 통일원, 1992

학술기관 인명

구 분	기 관	책임자	구 분	기 관	책임자
과 학 원	지리학연구소	김정락	과 학 원	자동화연구소	리승용
	지진연구소	리창일		전자계산기연구소	박용환
	수리공학연구소	김룡균		전자및자동화설계 연구소	김우집
	기계공학연구소	미 상		전자공학연구소	리경수
	연료연구소	미 상		전자재료연구소	리경수
	원자력연구소	박광무		자료통보연구소	미 상
	핵전자연구소	미 상		공업미생물연구소	리춘호
	물리화학연구소	미 상		생물학연구소	미 상
	화학공업연구소	리재엽		식물생리학연구소	미 상
	3월27일연구소	김인서		분자생물학연구소	미 상
	과학실험기계 연구소	박영선		조류학연구소	미 상
	전력및원격 조정연구소	김준홍		실험생물학연구소	미 상
	지질학연구소	김종희		식물학연구소	곽종송
	암석역학연구소	리룡암		유전공학연구소	미 상
	수학연구소	허 건		동물학연구소	미 상
	조종기계연구소	김영인		다(茶)연구소	미 상
	열공학연구소	한동식		건설기계화연구소	방양섭
	용접연구소	채현목		철재재료연구소	미 상
	전기연구소	최원경		건설과학연구소	미 상
	방사화학연구소	리상근		도시경영과학 연구소	미 상
	물리학연구소	계정련		전재료연구소	미 상
	9월27일연구소	조성경		무기전재연구소	미 상
	해저탐사연구소	고영수		건축공학연구소	신동철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협력 실무안내

구 분	기 관	책임자	구 분	기 관	책임자
과 학 원	도로공학연구소	미 상	농 업 과 학 원 (원장 리영균)	평양남새과학 연 구 소	김규송
	유색금속연구소	리방근		농업생물학연구소	김등무
	북부흑색금속 연 구 소	미 상		품종개량경작 과 학 연 구 소	미 상
	흑색금속연구소	리방근		작물재배연구소	럼덕수
	순금속연구소	미 상		농업경제학연구소	미 상
	열동력기계연구소	미 상		축산학연구소	김관중
	농업기계화연구소	강성룡		잠 학 연 구 소	김승중
	기계제작연구소	리종덕		강냉이연구소	장화범
	무기화학연구소	미 상		평양단팥연구소	리영삼
	석유화학연구소	미 상		농업관계연구소	미 상
	과학실험기구 연 구 소	박영선		육 종 연 구 소	김상연
	생물유기화학 연 구 소	미 상		간석지연구소	조 석
	유기화학연구소	리광훈		해 주 분 원	미 상
	규산염연구소	김응상		강 계 분 원	미 상
	고분자화학연구소	리상균		사 리 원분 원	미 상
	버림물생화학 정 화 연 구 소	미 상		해 산 분 원	전택일
농 업 과 학 원 (원장 리영균)	농업기계화연구소	강성룡	경공업과학원 (원장 리주용)	강냉이가공연구소	전경복
	토양학연구소	리근행		화학섬유연구소	미 상
	수의학연구소	미 상		종 이 연 구 소	미 상
	과수학연구소	장희금		식료연구소	김동수
	가금공학연구소	미 상		일용품연구소	미 상
	논벼연구소	김상련		비날론연구소	조상국
			방 직 연 구 소	미 상	

구 분	기 관	책임자	구 분	기 관	책임자
경공업과학원 (원장 리주웅)	섬유연구소	미 상	산림과학원 (원장 임재륙)	어 연구소	미 상
	수지가공연구소	량건일		경제림연구소	김권무
	식료기계연구소	최응규		보호학연구소	미 상
	신발연구소	현한영		응진분원	하만석
	발효연구소	미 상		원산분원	미 상
조선의학과학원 (원장 류규동)	의학연구소	미 상	철도과학연구원 (원장 만용순)	임업과학연구소	미 상
	의학생물학연구소	미 상		함흥분원	미 상
	의료기구연구소	미 상		문덕분원	김영제
	항생소연구소	미 상	채굴공학연구소	철도전기화연구소	황덕기
	천연물약품연구소	미 상		차량연구소	박철균
	중양연구소	김춘원		삼화운송연구소	서광훈
	약학연구소	최정환	석탄과학연구원 (원장 신문규)	채굴공학연구소	김석기
	미생물연구소	미 상		유연탄채굴공학 연구소	미 상
	합성제약연구소	미 상		선광공학연구소	미 상
	산업의학연구소	미 상		암석역학연구소	리용암
	내분비연구소	장헌철		무연탄채굴공 학 연구소	김민수
외과연구소	한병각	사회과학원 (원장 김석형)	고고학연구소	김용남	
수산물가공연구소	미 상		언어학연구소	정순기	
동해수산연구소	미 상		국제법연구소	미 상	
의과학연구소	박일철		주체문학연구소	미 상	
의내과연구소	최지현		무역경제연구소	미 상	
교육과학원 (원장 신길수)	침구연구소	허의근	김일성동지혁명 역사연구소	역사연구소	전형률
	교육사상연구소	미 상		법학연구소	심형일
	사회주의교육학 연구소	남진우			
	고등교육연구소	미 상			
	심리학연구소	미 상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협력 실무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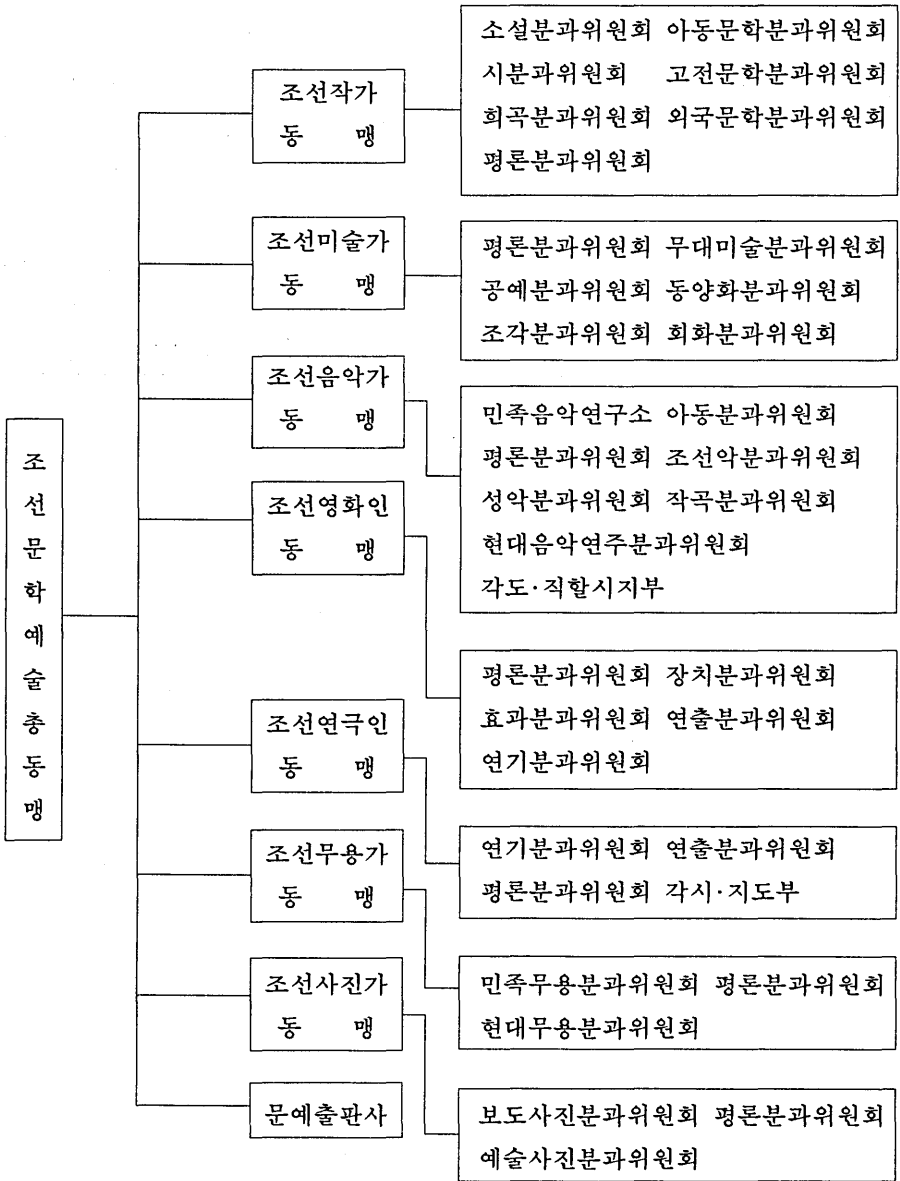
구 분	기 관	책임자	구 분	기 관	책임자	
사 회 과 학 원 (원장 김석형)	철 학 연 구 소	김창원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박관오)	수 학 역 학 부	리근배	
	민족고전연구소	김화영		지 리 학 부	미 상	
	주체경제연구소	김원삼		생 물 학 부	미 상	
	국제관계연구소	미 상		법 학 부	조근경	
	사회주의경제 관 리 연 구 소	김하광		언어문학연구부	미 상	
	세 계 경 제 및 남남협력연구소	전경희		주체사상연구소	김연천	
	김일성동지사상 연 구 소	민영철		외국어문학부	김형수	
주 체 과 학 원 (원장 리지수)	주체사상연구소	박승덕		물 리 학 부	강창환	
				역 사 학 부	최영식	
기 타	군축및평화연구소	송호경		자 동 화 학 부	김영준	
	국제문제연구소	리석록		철 학 부	미 상	
	조선컴퓨터센터	박세윤		조 선 어 문 학 부	미 상	
	조국통일연구원	한응식		정 치 경 제 학 부	미 상	
	중앙품질및개량 과 학 연 구 소	정기철		전 자 계 산 기 연 구 소	미 상	
	중앙공업연구소	미 상	전 자 물 리 연 구 소	미 상		
	통일문제연구소	전금철	김책공업종합대학 (총장 김경완)	과 학 부	김창익	
	민족문제연구회	박승덕		전 자 계 산 기 학 부	류순렬	
	중앙과학기술 정 보 연 구 소	김천영		기 계 공 학 부	고순화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박관오)	경 제 학 부		최진혁	야 금 학 부	곽태홍
		원 자 력 학 부		미 상	지 질 탐 사 학 부	김석태
생 물 학 부		지웅환		전 자 공 학 부	탁명환	
				전 기 공 학 부	고천식	
				물 리 공 학 부	미 상	
				재 료 공 학 부	곽봉만	
				지 질 학 부	미 상	

구 분	기 관	책임자	구 분	기 관	책임자
김책공업종합대학 (총장 김경완)	정치경제학부	미 상	김책공업종합대학 (총장 김경완)	수치조작기계 연 구 소	미 상
	전자공업연구소	미 상		자동화공학부	김택제
	금속 연구소	최영실		전자계산기연구소	미 상
	지질광업연구소	김승운		류체기계연구소	신종립
	저열탄발전소 연 구 소	미 상		지 질 연 구 소	미 상
	광업 연구소	미 상		로봇공학연구소	미 상
	종합분석연구소	지수홍		석 탄 연 구 소	미 상
				재 료 연 구 소	백농이

* 출처 : 「북한기관·단체별 인명집」, 통일원, 1993

문화예술부문

조선문학예술총동맹 기구표 및 인명



기 관 명	직 위	성 명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위원장	백인준
- 조선작가동맹	위원장	김병훈
- 조선음악가동맹	위원장	김원균
- 조선미술가동맹	위원장	정영만
- 조선연극인동맹	위원장	이 단
- 조선무용가동맹	위원장	박경실
- 조선영화인동맹	위원장	리종순
- 조선사진가동맹	위원장	고룡진

* 출처: 「북한기관·단체별 인명집」, 통일원, 1993

주요연극단

단 체 명	인 원	단 체 명	인 원
국립연극단	180명	사리원시연극단	60명
평양연극단	120명	해주시연극단	60명
평양청년연극단	80명	개성시연극단	60명
중앙방송연극단	60명	원산시연극단	60명
인민군연극단	80명	함흥시연극단	80명
사회안전부연극단	80명	청진시연극단	80명
철도부연극단	80명	강계시연극단	60명
평양시연극단	60명	해산시연극단	60명
신의주시연극단	60명	인민군각군단연극단	30~40명

주요 가극·무용·예술단

단 체 명	인 원
피 바 다 가 극 단	1971년 7월 17일 창립, 380명
만 수 대 예 술 단	1946년 평양가극단으로 창립, 1969년 9월 27일 만수대예술단으로 개칭, 약 300명
평 양 예 술 단	1972년 모란봉 예술단을 개칭, 약 300명
평 양 청 년 예 술 단	약 200명
국 립 가 무 단	약 200명
국 립 가 극 단	약 200명
철 도 부 예 술 단	약 150명
인 민 군 협 주 단	1947년 창립, 약 180명
사 회 안 전 부 예 술 단	약 150명
국 립 교 향 악 단	약 150명
국립예술영화예술단	약 160명
방 송 예 술 단	약 160명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약 300명
평 안 북 도 가 무 단	80~90명
평 안 남 도 가 무 단	80~90명
황 해 북 도 가 무 단	80~90명
황 해 남 도 가 무 단	80~90명
강 원 도 가 무 단	80~90명
함 경 북 도 가 무 단	80~90명
함 경 남 도 가 무 단	80~90명
자 강 도 가 무 단	80~90명
양 강 도 가 무 단	80~90명
개 성 시 가 무 단	80~90명
해 군 협 주 단	80명
공 군 협 주 단	80명

회관·궁전·학습당

명 칭	설 립 일	내 용	비 고
2·8문화회관	1975.10. 7	노동자 및 인민군의 사상·문화 교양장소	극장(6,000석·1,100석) 영화관(600석)
인민문화궁전	1974. 1. 1	문화·오락시설을 구비한 북한주민들의 휴식, 학습, 문화, 교양장소	대회의장(3,000석), 원탁회의장(930㎡) 영화관 등
평양학생소년 궁전	1963. 9.30	평양시 청소년들의 특별과외 활동 장소	장서(5만여권), 극장(1,100석), 체육관(500명 수용), 도서관 등
인민대학습장	1982. 2.	'전사회의 인텔리화'를 위한 종합도서관	장서능력(3,000만권), 1일수용능력(12,000명)

극 장

명 칭	설 립 일	내 용	비 고
만수대예술극장	1977. 1. 1	관람석 : 4,000석	북한최대의 극장
평양대극장	1960. 8.13	관람석 : 2,200석 최다무대출연인원 : 2,000명 소극장(종합리허설실) 수용인원 : 7,000명	가극공연외 각종 기념행사 개최
평양교예극장		관람석 : 1,640석	자동전진무대설치
교예극장	1989. 5. 1	관람석 : 3,500석	평양축전 시설
동평양대극장	1989. 5.18	관람석 : 3,500석	평양축전 시설
국제영화회관	1989. 5.18	관람석 : 3,150석	평양축전 시설
봉화예술극장	1985. 6.	관람석 : 2,000석	현대적 무대공연설비
함흥대극장	1984. 4.15	관람석 : 2,500석 소극장 : 700석, 방 : 800개	김정일 지시로 건설

* 출처 : 「북한개요」, 통일원, 1992

주요 문화예술기관·단체인명

분 야	기 관 명	직 위	성 명
영 화	조선예술영화촬영소	총 장	백 민
	조선기록영화촬영소	총 장	리 경 삼
	조선2.8예술영화촬영소	총 장	권 혁 봉
	조선과학교육영화촬영소	총 장	리 하 규
	조선번역영화제작소	소 장	박 섭
	조선중앙영화배급소	소 장	리 춘 형
	대중과학영화창작단	단 장	리 성 환
	만경대촬영단	단 장	우 계 년
	영화작품국가심의위원회	위 원 장	리 승 환
	조선국가영화문헌고	총지배인	박 순 태
	조선영화과학연구소	소 장	천 두 익
	조선영화수출입심사	사 장	최 학 래
	조선대외영화제작사	사 장	박 찬 성
	평양필름현상소	소 장	라 윤 의
	평양연극영화대학	학 장	리 경 삼
예술단	평양예술단	단 장	송 석 환
	평양만경대예술단	단 장	정 춘 화
	만경대예술단	단 장	박 영 선
	평양모란봉예술단	단 장	김 승 조
	평양소년예술단	단 장	김 시 범
	평양청년학생예술단	부 단 장	송 완 수
음 악	평양음악무용단	단 장	정 봉 석
	평양음악대학	학 장	최 순 원
	평양음악무용대학	학 장	김 회 준
	국립교향악단	단 장	김 정 호

남북 문화교류시 북한 출판작품

〈뉴욕남북영화제('90. 10, 뉴욕)〉

제 목	감 독	출 연
도라지 꽃	조 경 순	오미란·김령조
달매와 범달이	윤 룡 규	김용순·조명선
조선아 달려라	박 승 복	김 철·조경숙
우리는 묘향산에서 만났다	오 병 호	홍영희·김 원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	엄 길 선	리인문·로복실

〈'90 송년통일전통음악회('90.12, 서울)〉

구 분	연 주 곡 명
여성민요독창	평북 영변가, 바다의 노래
여성민요독창	노들강변, 양산도
남성민요독창	산천가, 양천아리랑
남성민요독창	배따라기
여성저음독창	통일의 길
여성민요3중창	신고산타령
여성민요5중창	민요연곡
혼성민요5중창	회양닐리리
혼성2중창	“사랑가”(민족가곡〈춘향전〉중에서)
혼성민요제창	정방산성가, 박연폭포, 자진난봉가
가야금독주와 병창	응혜야
소합창	우리의 소원
단소독주	중모리, 안망
옥류금독주	도라지

〈남북코리아서화전('91. 5, 북경)〉

분 야	작 가	작 품 명
유 화	정관철(인민예술가) 장재식 김권봉 황태민 홍성철(인민예술가) 정영화 최중명, 김영재 한상인	홍원풍경 풍양회 강가에서 북포태산 봄 소나기 충석정 저녁 정오 국화
조 선 화	오영성 리석호 리석호 정종여(인민예술가) 김상호(인민예술가) 문화춘(공훈예술가) 김정원 리석호 정창모(인민예술가) 리석호 안상목 정창모(인민예술가) 황 민 지승석	장미 소나무 구룡연 모란 들끓는 건설장의 밤 송도의 파도 묘향산 상원암 부영이 장벽을 넘어오는 철새 목단 일요일 분계선의 옛집터 위면암 철성문
서 예	리형규 렴태경 오광섭 최원삼(공훈예술가) 최원삼(공훈예술가)	통일 통일대하 별 노도 눈꽃

〈'92 통일예술축제('92. 8, 사할린)〉

구 분	연 주 곡 명
여성4중창	반갑습니다
남성독창(리성훈)	풍년가, 벌목부의 노래
여성독창(림화영)	기러기떼 나르네
혼성4중창	3대자랑가
남성중음독창(오경철)	소방을 노래, 군밤타령
여성3중창과 혼성 6중창	통일그네 쌍그네, 영천아리랑
여성민요독창	모란봉, 양산도
혼성합창	내나라 제일로 좋아
무용	손복춤 10인무
무용	3인무(남 2명, 여 1명)
무용	키춤 8인무
무용	쟁강춤 8인무
가야금 독주(정선영)	응혜야

종교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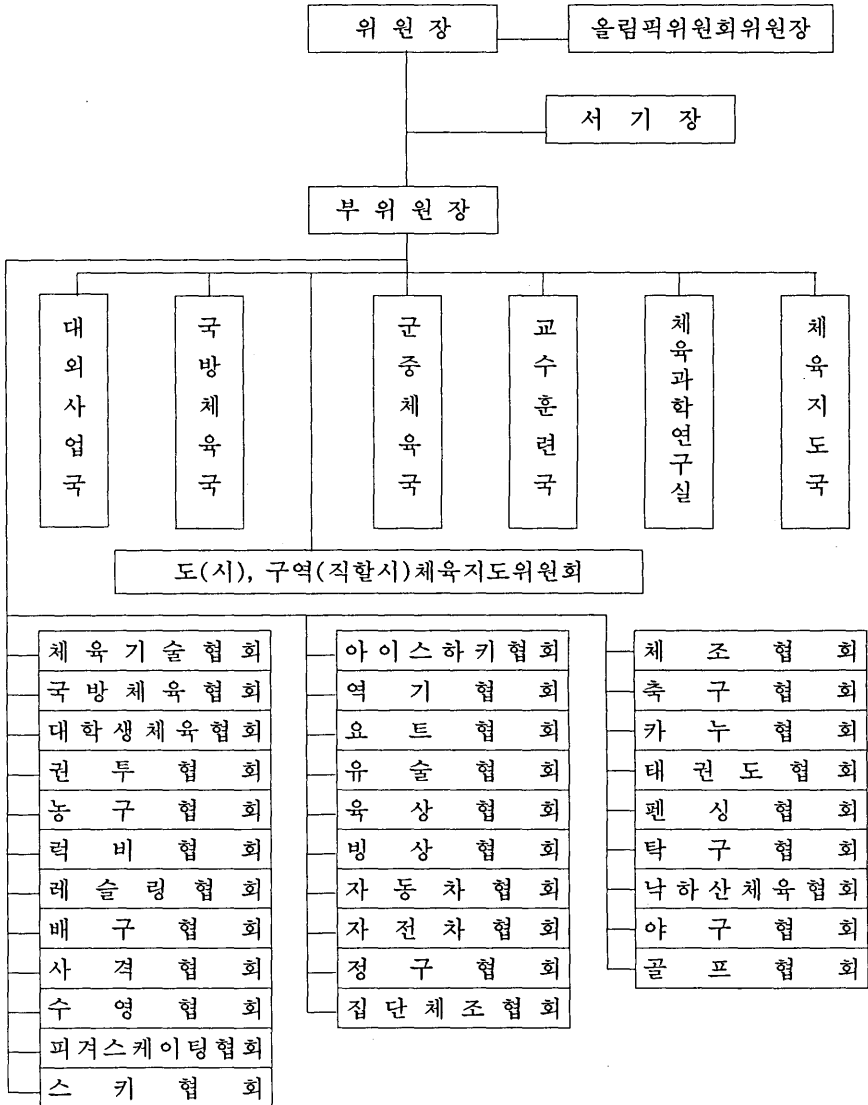
종교단체·시설

구 분	단 체	신자수	교직자	종교시설	비 고
개신교	조선기독교도연맹(위원장: 강영섭)	1만여명	목사: 30명 전도사: 300명	1988.11 봉수교회 완공 '92.11 칠골교회 완공 500여개 가정교회	1988년 이후 성탄절기도회 매년개최
천주교	조선천주교인협회(위원장: 장재철)	800여명	신부·수녀없음 신자대표: 박경수	1988.10 장충성당 완공	
불 교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박태호)	1만여명	승려: 300명 모두 대처승	사찰 60여개	1988년 이후 성도절, 열반절, 석탄절 기념법회 매년 개최
천도교	조선천도교회중앙지도위원회(위원장: 유미영)			교당 800여개	1986년부터 천도교 창도 기념행사 매년개최
범종교	조선종교인협의회(회장: 강신혁)				

* 출처: 「북한개요」, 통일원, 1992

체육부문

국가체육위원회 기구도



* 출처 : 「북한개요」, 통일원, 1992

체육기관·단체 인명

기관(단체)명	책 임 자	기관(단체)명	책 임 자
국가체육위원회	박명철	조선궁술연맹	송명호
조선올림픽위원회	박명철	조선권투연맹	김재원
조선태권도위원회	차병옥	조선농구연맹	김성환
조선탁구협회	미 상	조선력비협회	김인국
조선축구협회	최룡해	조선레슬링협회	김영빈
조선배구협회	김상복	조선요트협회	미 상
조선사격협회	진경문	조선유술협회	김춘용
조선수영협회	한영진	조선육상협회	김태현
조선빙상경기협회	김남교	조선자동차협회	미 상
조선휘거협회	윤기정	조선정구협회	미 상
조선아이스하키협회	미 상	조선집단체조협회	미 상
조선역기협회	장태식	조선체조협회	강용광
조선야구협회	미 상	조선체육기술협회	미 상
조선카누협회	미 상	조선골프협회	문병원
조선펜싱협회	미 상	조선바둑협회	박명철
조선낙하산체육협회	미 상		

* 출처 : 「북한 기관·단체별 인명집」, 통일원, 1993

주요 체육시설

〈실내 체육관〉

명칭 및 위치	시 설 내 용	비 고
평양체육관 (평양시 보통강 구역 신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 관 : 1973. 4. 8 ○ 건 평 : 70,000㎡(21,149평, 4층) ○ 경기장 : 86×40㎡ ○ 대경기장 : 길이 85m, 너비 538m ○ 좌 석 : 20,100석 ○ 총 면 적 : 1,350,000㎡(407,700평) ○ 용 도 : 배구, 농구, 탁구, 핸드볼, 체조, 레슬링, 유도, 예술 체조, 기계체조등 11개 종목의 실내경기 및 군중집회 등 가능 ○ 주 차 장 : 1,000여대 주차가능 ○ 기 타 : 휴게실, 승강기 2대, 연습장 10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최대의 실내 체육관 ○ 79.4 제35회 세계 탁구선수권대회 개최 ○ 86.6 제6차 국제여자배구대회 개최
평양빙상관 (평양시 보통강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 관 : 1982. 4. 7(완공, 1981.12. 6) ○ 건 평 : 25,000㎡(7,575평) ○ 좌 석 : 6,000석 ○ 높 이 : 65.5㎡ ○ 용 도 : 스케이팅, 하키, 피겨스케이팅 기타 배구, 농구, 탁구장으로 활용가능 ○ 부대시설 : 8개 휴게실, 육체훈련장, 한증탕, 건조실, 스케이트 수리실, 상점, 심판실,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층 원추형건물 ○ 얼음판온도 : 영하3°~5°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협력 실무안내

명칭 및 위치	시 설 내 용	비 고
창광원수영관 (평양시 보통강 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 장 : 1980. 3.21(착공 : 1979. 5.21) ○ 좌 석 : 2,000석 ○ 용 도 : 수영, 수구, 다이빙등 국제 경기 가능 ○ 기 타 : 수로16개, 다이빙대 10개, 다이빙풀(21㎡=6.4평) ※ 다이빙대는 엘리베이터시설 ○ 특 징 : 물을 자동여과, 수온 및 공기 조절 자동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수기록은 1/1,000초까지 측정가능

〈육외경기장〉

명칭 및 위치	시 설 내 용	비 고
김일성경기장 (평양시 모란봉 구역 개선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 관 : 1982. 4.11(착공 : 1981.10.20) ○ 수용능력 : 10만명 ○ 용 도 : 축구, 육상, 집단체조 및 각종 군중집회소로 활용 ○ 기 타 : 인조잔디시설 및 야간경기 가능한 나이트시설·유개운 동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최대의 외 경기장 ○ 종래의 모란봉 경기장을 대폭 확장 개축후 '82.4.10부로 『김일성경기장』 으로 개칭
5월1일경기장 (평양 대동강 능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관 : 1989. 4.30 ○ 수용능력 : 15만명 ○ 규 모 : 6층 ○ 용 도 : 축구, 육상 등 종합경기장 및 탁구, 권투, 역도, 유도 등 훈련장 ○ 기 타 : 인조잔디, 야간경기 가능, 대 규모 전광모니터 설치, 프 레스 시설 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축전』에 대 비 건설, 평양축 전 개·폐회식장

명칭 및 위치	시 설 내 용	비 고
양각도축구경기장 (평양대동강 양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 관 : 1989. 4 ○ 수용능력 : 3만명 ○ 용 도 : 축구, 육상경기장으로 활용 ○ 기 타 : 인조잔디, 기자실등 시설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 규모의 축구경기장 ○ 『평양축전』에 대비 건설
동평양경기장 (평양시 동대원구역 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 공 : 1960 ○ 수용능력 : 4만명 ○ 용 도 : 축구, 육상 등 종합경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경기장

〈지방 체육시설〉

명칭 및 위치	시 설 내 용	비 고
해주경기장 (황남 해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 장 : 1984.4.15(착공 : 1980.10) ○ 부지면적 : 34,000㎡(경기장 1,000㎡) ○ 관 랑 석 : 32,000석 ○ 용 도 : 구기경기, 국방체육, 집단 체조, 민속경기장(축구, 육상종목 국제경기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경기장
함흥경기장 (함남 함흥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 모 : 200m×100m (6층단계식스텐드) ○ 수용인원 : 35,000여명 	
강계경기장 (자강도 강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 공 : 1981. 4 ○ 규 모 : 타종합경기장수준 	
해산경기장 (양강도 해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 장 : 1963년경(착공일 1963.6.30) ○ 총 면 적 : 50,000㎡(15,152평) ○ 관 랑 석 : 18,640석(스탠드 16층) ○ 용 도 : 타종합경기장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경기장
삼지연스키장 (양강도 삼지연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 립 1982년경(1981.2 확장개축) ○ 규 모 : 54km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협력 실무안내

명칭 및 위치	시 설 내 용	비 고
삼지연수영장 (양강도 삼지연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 모 : 길이 300m, 폭 110m ○ 기 타 : 선수촌 50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1.2.16 김정일 생일기념 사회주의 국가 청소년 국제빙상대회를 개최했음.
10월경기장 (평북 신의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 장 : 1965년 ○ 규 모 : 폭150m, 길이 1,200m, 높이 20m, 둘레 405m ○ 수용능력 : 4~50,000명 ○ 부대시설 : 출입문 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의주경기장을 10월경기장으로 개칭
청진경기장 (함북 청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 장 : 1980년 ○ 총 부 지 : 73,000㎡(22,121평) ○ 건 평 : 29,000㎡(8,788평) ○ 수용능력 : 50,000명 ○ 용 도 : 축구, 핸드볼, 농구, 배구, 육상, 정구 ※ 배구와 핸드볼은 같은장소 사용, 나머지는 독립구장 ○ 기 타 : 기타 구조물 면적 17,000㎡(5,152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조잔디구장
남포체육촌 (평남 남포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 장 : 1974.4(착공 : 1973년) ○ 수용능력 : 3만명 ○ 주요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부지 : 28만㎡ - 수영장면적 : 1,800㎡(545평) - 정구장 : 6개(경기용 4, 훈련용 2) - 야구장면적 : 9,800㎡(2,970평) - 기타 : 실내체육관, 송구장, 탁구장 ○ 활 용 : 체육선수(국가대표)양성과 집단수용관리, 국제체육경기에 대한 각종 체육의 기량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9.4 북한은 동 지역에 올림픽 경기장을 건설할 것을 발표

명칭 및 위치	시 설 내 용	비 고
신평경기장 (강원도 원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 장 : 1965.5 ○ 규 모 : 250m×150m ○ 용 도 : 축구, 배구, 농구, 육상 등 국제경기 가능 	○ 종합경기장
사리원경기장 (황북 사리원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 장 : 1981.10 ○ 규 모 : 160m×104m ○ 관 랑 석 : 35,000석 ○ 용 도 : 배구, 농구, 탁구, 체조, 유도, 권투, 레슬링, 역도 등 	○ 종합경기장
원산체육관 (강원도 원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 장 : 1970. 2.17 ○ 규 모 : 20,000㎡(6,061평) ○ 건 평 : 5,000㎡(5,515평) ○ 관 랑 석 : 1,700석 ○ 기 타 : 샤워장, 심판실, 방송실, 및 배구, 농구, 권투, 체조, 탁구, 예술체조 가능 	○ 각종목별 전문 체육지도원 34명 상주

〈기타시설〉

명 칭	시 설 내 용
체 육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포체육관 ○ 기관차체육관(73년 완공, 평양) ○ 평양학생소년궁전체육관
사 격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민군사격장(73년 완공, 평양) ○ 용기사격장
궁 도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라도궁도장(평양)
빙상훈련관 (평양 보통강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 관 : 1984. 2.16 ○ 부지면적 : 12,000㎡(경기장 3,340㎡) ○ 관 랑 석 : 3,340석 ○ 용 도 : 속도빙상, 빙상하키경기장 ○ 기타시설 : 휴게실, 한증탕, 건조실, 의무실

<종합체육단지>

명칭 및 위치	시 설 내 용	비 고
<p>안골체육촌 (평양시 만경구역 안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 공 : 1989. 9. 3 ○ 총관람석 : 5만석 ○ 총부지면적 : 175만㎡ ○ 연건축면적 : 267,000㎡ ○ 주요시설 : 육외종합운동장 1개, 실내체육관 10개, 피로회복관, 서산호텔, 체육인식당등 <p><육외종합운동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산축구경기장(30,000명 수용) <p><실내체육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핸드볼경기장(2,500명 수용) - 탁구경기장(4,500명 수용) - 경경기장(4,500명 수용) - 중경기장(2,500명 수용) - 배드민턴경기장(3,500명 수용) - 수영경기장(3,500명 수용) - 역도경기장(2,500명 수용) - 농구경기장(2,500명 수용) - 배구경기장(2,500명 수용) - 태권도전당(2,500명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양축전』에 대비하여 건설된 종합체육단지

* 출처 : 「북한의 체육현황」(통일원, 1987), 「북한개요」(통일원, 1992) 종합

주요 체육대회 현황

대 회 명	목 적	창설 및 개최	규 모 및 종 목
『백두산상』 체육축전	김정일생일 (2.16)기념	• 1977년 창설 • 매년 2~3월	◦ 각도·시 체육선수단 ◦ 축구·복싱 등 30여 종목 (동계종목 포함)
『만경대상』 체육축전	김일성생일 (4.15)기념	• 1969년 창설 • 매년 4~5월	◦ 각도 및 중앙체육 선수단 ◦ 육상·수구 등 30여 종목
『보천보 햇불상』 체육경기대회	보 천 보 전 투 승 리 (1937.6. 4)기념	• 1960년 창설 • 매년 6~7월	◦ 각도·시 체육선수단 및 각지역 체육구락부원 ◦ 무선통신·낙하산 등 국 방체육과 육상·씨름 등 30여 종목
전국 체육구락부 생 체육경기대회	신인선수 발굴	• 1982년 창설 • 매년 8월	◦ 전국체육구락부생 ◦ 축구·무선통신 등 200여 종목
공화국창건 기념체육대회	정권창건 (9.9)기념	• 1977년 창설 • 매년 9월	◦ 각도·시 체육선수단 ◦ 사격·수영 등 30여종목
당창건기념 체육경기대회	당 창 건 (10. 10)기념	• 1975년 창설 • 매년 10월	◦ 각도·시 중앙체육선수단 ◦ 육상·축구 등 40여 종목
종목별공화국 선수권대회	우수선수발굴	• 1979년 창설 • 매년 10~11월	◦ 축구·수영 등 40여종목

* 출처 : 「북한개요」, 통일원, 1992

언론·출판부문

주요 언론기관

<라디오 방송>

방 송 국 명	방송방식	방송시간	비 고
조 선 중 앙 방 송	300kW 중파, 단파	22시간	대내방송
평 양 방 송	500kW 중파, 단파	23시간30분	대내 및 대남방송
평 양 FM 방 송		8시간	대남방송
구국의 소리방송	중파, 단파	13시간	대남(흑색)방송

<텔레비전 방송>

방 송 국 명	방송방식	방송시간	비 고
조선중앙TV방송	PAL	평일 15~22시 수·일요일 09~12시	대내방송
개성TV방송	NTSC	월요일방송안함. 하루4시간	대남방송
만수대TV방송	PAL	토·일요일만 방송	지역방송 (평양)

〈신 문〉

신 문 명	발행기관	성 격	창 간	발행내역
로 동 신 문	노 동 당	노동당기관지	1946. 1	150만부, 6면 발행, 일간
민 주 조 선	정 무 원	정무원기관지	1946. 6	30만부, 4면 발행, 일간
평 양 신 문	평양시인민 위 원 회	평양시인민 위원회기관지	1957	5만부, 4면발 행, 일간
로 동 청 년	사 로 청	근로자 대상 선전교양지	1946. 4.20	6만부, 4면발 행, 일간
새 날	사 로 청	청소년·학생 대상 선전교양지	1971. 4. 1	주2회 타블 로이드, 4면
통 일 신 보	통일신보사	무소속대변지	1972. 8. 4	30만부, 4면, 주간
로동자신문	직 맹	근로자·노동자 대상 선전교양지	1946. 2. 9	2~3만부
농업근로자	농 근 맹	농민대상선전 교양지		주2회, 4면

* 출처 : 「북한방문안내」, 통일원, 1993

출판사

기관	책임자	기관	책임자
조선로동당출판사	김용학	사로청출판사	우종학
외국문종합출판사	황순명	금성청년출판사	강철부
건설출판사	리창규	경제출판사	리수철
공업종합출판사	김동수	교육도서출판사	김원길
로동단체출판사	채준병	농업출판사	허경필
조선미술출판사	미상	도서번역출판사	김려화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정서춘	사회과학출판사	미상
여성출판사	정명희	예술교육출판사	미상
외국문도서출판사	송기현	평양출판사	리영일
조선사회민주당출판사	김석준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림광선

* 출처 : 「북한 기관·단체별 인명집」, 통일원, 1993

南北交流協力에 관한法律

制定 1990. 8. 1 法律 第4239號

改正 1990. 12. 27 法律 第4268號(政府組織法)

1992. 12. 8 法律 第4522號(出入國管理法)

第 1 條(目的) 이 法은 軍事分界線 以南地域(이하 “南韓”이라 한다)과 그 以
北地域(이하 “北韓”이라 한다)間的 相互交流과 協力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
요한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出入場所”라 함은 北韓으로 가거나 北韓으로부터 들어올 수 있는 南韓
의 港口·飛行場 기타 場所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곳을 말한다.
2. “交易”이라 함은 南韓과 北韓間的 物品의 搬出·搬入을 말한다.
3. “搬出·搬入”이라 함은 賣買·交換·賃貸借·使用賃借·贈與등을 원인으로 하
는 南韓과 北韓間的 物品의 移動(단순히 第3國을 경유하는 物品의 移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協力事業”이라 함은 南韓과 北韓의 住民(法人·團體를 포함한다)이 共同
으로 행하는 文化·體育·學術·經濟 등에 관한 諸般活動을 말한다.

第 3 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南韓과 北韓과의 往來·交易·協力事業 및 通信役
務의 제공 등 南北交流과 協力을 目的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
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다른 法律에 우선하여 이 法을 適用한다.

第 4 條(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의 設置) 南韓과 北韓間的 相互交流 및 協力
(이하 “南北交流·協力”이라 한다)에 관한 政策을 協議·調整하고, 南北交流·
協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統一院에 南北交流協力推
進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둔다. <개정 90. 12. 27>

第 5 條(協議會의 구성) ①協議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15人이내의 委員으
로 구성한다.

②委員長은 統一院長官이 되며, 協議會의 業務를 統轄한다. <개정 90. 12. 27>

③委員은 次官 및 次官級 公務員중에서 國務總理가 指名하는 者가 된다.

④委員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委員長이 미리 지정한 委員이 委員長의 職

務를 代行한다.

⑤協議會에 幹事1人을 두되, 幹事は 統一院所屬 公務員 중에서 委員長이 指名하는 者가 된다. <개정 90. 12. 27>

第6條(協議會의 機能) 協議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

1.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政策의 協議·調整 및 基本原則의 수립
2.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각종 許可·승인 등에 관한 重要사항의 協議·調整
3. 交易對象品目的 범위 決定
4. 協力事業에 대한 總括·調整
5. 南北交流·協力の 촉진을 위한 지원
6. 南北交流·協력과 관련된 重要사항에 대한 關係部處間의 協調推進
7. 기타 委員長이 附議하는 사항

第7條(協議會의 議事) ①協議會의 會議는 委員長이 召集한다.

②協議會의 會議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③協議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條(實務委員會) ①協議會에 上程할 議案을 준비하고, 協議會의 委任을 받은 事務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協議會에 實務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②實務委員會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9條(南·北韓 往來) ①南韓과 北韓의 住民이 南韓과 北韓을 往來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統一院長官이 發給한 證明書を 소지하여야 한다. <개정 90. 12. 27>

②在外國民이 外國에서 北韓을 往來하는 때에는 在外公館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南韓의 住民이 北韓의 住民 등과 會合·通信 기타의 방법으로 接觸하고자 할 때에는 統一院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0. 12. 27>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明書의 發給節次,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在外國民의 범위와 申告節次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承認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0條(海外同胞 등의 出入保障) 外國國籍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大韓民國의

旅券을 소지하지 아니한 海外居住同胞가 南韓에 往來하고자 할 때에는 旅券法에 의한 旅行證明書を 소지하여야 한다.

第11條(南·北韓 往來에 대한 審査) 出入場所에서 南韓과 北韓을 直接 往來하는 南韓과 北韓의 住民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審査를 받아야 한다.

第12條(交易當事者) 交易(北韓과 第3國間에 物品의 中繼貿易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할 수 있는 者는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政府投資機關 또는 對外貿易法에 의하여 貿易業의 許可를 받은 者(이하 “交易當事者”라 한다)로 하되, 統一院長官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協議會의 議決을 거쳐 交易當事者중 특정한 者를 지정하여 交易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0. 12. 27>

第13條(搬出·搬入의 승인) 交易當事者가 物品의 搬出·搬入을 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物品 또는 去來形態·代金決濟方法에 관하여 統一院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主要內容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0. 12. 27>

第14條(交易對象物品의 公告) 統一院長官은 物品의 搬出·搬入에 관하여 協議會의 議決을 거쳐 다음 各號의 사항을 미리 公告하여야 한다. 公告한 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0. 12. 27>

1. 物品의 搬出·搬入에 관한 自動承認品目·制限承認品目 또는 禁止品目的 구분

2. 制限承認品目에 관한 제한내용 및 承認節次

第15條(交易에 관한 調整命令 등) ①統一院長官은 交易에 관한 協定の 준수나 物品의 搬出·搬入의 秩序維持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交易當事者에게 搬出·搬入하는 物品의 價格·數量·品質 기타 去來條件등에 관하여 필요한 調整을 命할 수 있다. <개정 90. 12. 27>

②統一院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交易當事者에게 交易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0. 12. 27>

第16條(協力事業者) ①協力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統一院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0. 12. 2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의 요건과 承認取消事由 및 그 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7條(協力事業의 승인) ①第16條 規定에 의하여 協力事業의 승인을 얻은 者(이하 “協力事業者”라 한다)가 協力事業을 施行하고자 할 때에는 매 事業마다 統一院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事業의 내용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0. 12. 2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力事業의 승인요건과 그 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8條(協力事業에 관한 調整命令등) ①統一院長官은 協力事業이 南北交流·協力の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協力事業者에게 그가 施行하는 協力事業에 대하여 필요한 調整을 命할 수 있다. <개정 90. 12. 27>

②統一院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協力事業者에게 協力事業의 施行內容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0. 12. 27>

第19條(決濟業務의 取扱機關) ①統一院長官은 南北交流·協력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財務部長官과 協議하여 決濟業務를 취급할 機關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0. 12. 2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濟業務取扱機關이 행하는 決濟의 범위·방법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0條(輸送裝備의 運行) ①南韓과 北韓間의 船舶·航空機·鐵道車輛 또는 自動車등을 運行하고자 하는 者는 統一院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0. 12. 2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의 基準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1條(輸送裝備등의 出入管理) 船舶·航空機·鐵道車輛 또는 自動車등과 그 乘務員이 出入場所에 出入하는 때에는 出入國管理法第69條 내지 第76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개정 92. 12. 8>

第22條(通信役務의 제공) ①南北交流·協力の 촉진을 위하여 郵便役務 및 電氣通信役務를 제공할 수 있다.

②南韓과 北韓間에 제공되는 郵便役務 및 電氣通信役務의 提供者·종류·料金·取扱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3條(檢疫등) ①北韓으로부터 來港하는 船舶·航空機·荷物は 檢疫調査를 받

아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疫調査에는 檢疫法 第6條 내지 第28條 및 第33條 내지 第35條의 2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檢疫法 第19條 및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檢疫證 또는 假檢疫證의 교부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北韓으로부터 南韓으로 오는 者중 傳染病에 感染되었거나 感染이 疑心되는 者와 傳染病菌의 病原體에 汚染되었거나 汚染이 의심되는 물건을 소지한 者는 國立檢疫所長 또는 保健所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24條(南北交流·協力の 支援) 政府는 南北交流·協力を 增進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法에 따라 行하는 南北交流·協力を 위한 事業을 施行하는 者에게 補助金을 支給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第25條(協調要請) 統一院長官은 南北交流·協力を 增進시키고 관련 政策樹立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係專門家 및 南北交流·協力の 經驗이 있는 者에게 의견의 陳述 등 필요한 協調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協調를 요청받은 者는 正當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0. 12. 27>

第26條(다른法律의 準用) ①交易에 관하여 이 法에 특별히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對外貿易法 등 貿易에 관한 法律을 準用한다.

②物品의 搬出·搬入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의 賦課·徵收·減免 및 還給등에 관한 法律을 準用한다. 다만, 物品의 搬入에 있어서는 關稅法에 의한 課稅規定, 防衛稅法第4條第1項第1號의 規定 및 다른 法律에 의한 輸入賦課金에 관한 規定은 이를 準用하지 아니한다.

③南韓과 北韓間의 投資, 物品의 搬出·搬入 기타 經濟에 관한 協力事業 및 이에 隨伴되는 去來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法律을 準用한다.

1. 外國換管理法
2. 外資導入法
3. 韓國輸出入銀行法
4. 輸出保險法
5. 對外經濟協力基金法

- 6. 法人稅法
- 7. 所得稅法
- 8. 租稅減免規制法
- 9. 輸出用原材料에 대한關稅等還給에 관한特例法
- 10.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律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法律을 準用함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으로 그에 대한 特例를 정할 수 있다.

第27條(罰 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は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1,0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1.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明書を 發給받지 아니하고 南韓과 北韓을 往來하거나 同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會晤·通信 기타의 방법으로 北韓의 住民과 接觸한 者
- 2.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物品을 搬出 또는 搬入한 者
- 3.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協力事業을 施行한 者
- 4.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明書を 發給받거나 第9條第3項, 第13條 또는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는 者
- 5.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南韓과 北韓間에 船舶·航空機·鐵道車輛 또는 自動車등을 運行한 者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は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1.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北韓을 往來한 在外國民
- 2.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命令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者
- 3.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命令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者

③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28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7條에 規定에 해당하는 行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

의 規定에 의한 罰金刑을 科한다.

第29條(刑의 減輕등) 第27條第1項 및 第2項第1號의 罪를 범한 者가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第30條(北韓住民擬制) 이 法(第9條第1項 및 第11條를 제외한다)의 適用에 있어서 北韓의 路線에 따라 활동하는 國外團體의 構成員은 이를 北韓의 住民으로 본다.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다른 法律의 改正) 租稅減免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에 第24號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24.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

附 則<90. 12. 27>

第 1 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省略>

第 2 條 내지 第10條 省略

附 則<92. 12. 8>

第 1 條(施行日) 이 法은 1993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 2 條 내지 第6條 省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정 1990. 8. 9 대통령령 제13071호
- 개정 1991. 2. 1 대통령령 제13269호(통일원과그소속기관직제)
- 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58호(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 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 1993. 3. 30 대통령령 제13872호(출입국관리법시행령)
-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78호(교통세법시행령)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출입장소) ①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곳”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91. 2. 1, 93. 3. 30>

1. 관문점
2.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공항<개정 93. 3. 30>
3. 개항질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항으로서 통일원장관이 지정하는 개항
4. 기타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통일원장관이 지정하는 곳

②통일원장관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무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 및 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1. 2. 1>

제 2 장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제 3 조(협의회의 회의) 위원장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을 들을 수 있다.

제 5 조(수당 등)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가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6 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통일원차관이 되며,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91. 2. 1>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은 협의회회의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행정기관의 장 및 협의회 위원장이 상정할 의안과 관련있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1급 내지 3급 국가공무원(1급 내지 3급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된다.

제 7 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협의회 위원장이 지시한 협의회 의안의 사전 검토·조정
2. 협의회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
3.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관계부처간의 실무협조사항
4. 기타 협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8 조(준용규정등) ①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장 남북한 왕래등

제 9 조(증명서의 규격 및 기재사항)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 (이하 “방문증명서”라 한다)는 북한방문증명서와 남한방문증명서로 나눈다.

②방문증명서의 규격은 가로 8.7센티미터·세로 12.5센티미터로 하고, 표지의 상단에 “방문증명서”를, 하단에 “통일원”을 표기한다. <개정 91. 2. 1>

③방문증명서 표지의 색상과 면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협력 실무안내

1. 북한방문증명서 : 갈 색·8면

2. 남한방문증명서 : 청남색·8면

④ 방문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1. 2. 1>

1. 증명서번호

2. 성 명

3. 성 별

4. 생년월일

5. 방문목적

6. 방문기간

7. 신 장

8. 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증명서의 발급신청)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남한주민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 2. 1>

1.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2. 신원진술서

3. 방문증명서용 사진(발급신청일전 3월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 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의 것을 말한다.) 4매

4. 병역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또는 허가서. 다만, 해당자에 한한다.

5.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6. 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방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 2. 1>

1.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2. 제1항제3호 및 제6호의 사진·서류 또는 자료

③통일원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4호·제6호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또는 자료를 방문증명서를 교부하는 때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1. 2. 1>

④외국에 나가있는 남한주민 또는 북한주민이 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신청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1. 2. 1>

제11조(대리신청) ①대리인이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리인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2.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②대리인이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북한주민을 대리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대리인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서류
 - 가. 본인의 위임장 및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나. 초청장 사본 등 초청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제12조(증명서발급의 협의) 통일원장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내용이 중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방문증명서 발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 2. 1>

1. 100인 이상의 단체 왕래
2. 정치적 목적의 왕래
3.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왕래

제13조(편의제공) 통일원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자에게 필요한 안내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91. 2. 1>

제14조(증명서의 재발급)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가 발급받은 방문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방문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된 경우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방문증명

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1. 2. 1>

1. 재발급 신청서
2. 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진 2매
3. 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15조(동반자녀의 병기) 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가 14세미만의 자녀를 동반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방문증명서에 자녀의 동반을 병기할 수 있다.

제16조(방문기간) ①통일원장관은 방문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 그 방문목적에 따라 1년 6월이내의 방문기간을 정하여 방문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91. 2.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기간은 당해 방문증명서의 최초의 방문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증명서의 반납 등) ①방문증명서를 소지하고 남한 또는 북한을 방문한 자가 귀환할 때에는 출입장소에서 방문증명서를 반납하여야 하며, 제1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북한방문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북한을 방문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방문증명서를 통일원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91. 2. 1>

③통일원장관은 방문증명서의 발급대상이 된 자가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발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1. 2. 1>

제18조(재외국민의 북한 왕래신고)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의 범위는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왕래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출발하기 5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북한방문신고서
2. 기타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③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북한을 왕래한 경우에는 귀환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한 때에 이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북한방문결과보고서

2. 기타 재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9조(접촉승인신청) ①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접촉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이 인정한 왕래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당연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접촉을 제외한 회합·통신 기타 방법의 접촉으로 한다. <개정 91. 2. 1>

②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접촉 20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 2. 1>

1. 북한주민접촉신청서

2. 신원진술서

3.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외국에 나가 있는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2항 각호의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통일원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1. 2. 1>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후 7일 이내에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일원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한 때에 이를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91. 2. 1>

1. 북한주민의 참가가 예상되는 국제행사의 참가를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동 행사에서 또는 동 행사와 관련하여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2. 외국을 여행하는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3. 외국에서 가족(8촌이내의 친·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를 말한다)인 북한주민과 회합한 자

4.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5. 편지의 접수등 사전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자

제20조(특례조치) 통일원장관은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있는 때 및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제9조 내지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91. 2. 1>

제21조(출입심사공무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한 왕래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출입심사공무원”이라 한다)은 통일원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개정 91. 2. 1>

제22조(출입심사) ①법 제11조에서 “심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91. 2. 1>

1. 신원확인
2. 휴대한 물품 등의 검사
3. 검역
4. 방문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의 확인
5.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심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 등은 통일원장관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개정 91. 2. 1>

제23조(심사확인) ①출입심사공무원은 제22조의 심사를 받은 자가 소지한 방문증명서에 심사확인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②출입심사공무원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자의 왕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당국의 위임을 받은 자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합의에 의한다.

제24조(휴대금지품의 고시) 통일원장관은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가 휴대할 수 없는 물품등의 종류·수량 및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의 처리방법을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91. 2. 1>

제 4 장 교역

제25조(교역당사자의 지정) 통일원장관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당사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전에 미리 상공자원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1. 2. 1, 93. 3. 6>

제26조(반출·반입의 승인신청)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반출·반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 2. 1>

②통일원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방법을 미리 정할 수 있다. <개정 91. 2. 1>

③통일원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개별적 승인에 갈음하여 물품 또는 대금결제방법 등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포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개정 91. 2. 1>

④통일원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반입의 승인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무부장관·상공자원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칠 수 있다. <개정 91. 2. 1, 93. 3. 6>

제27조(변경 승인사항 등) ①법 제1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내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금액의 변경. 다만, 동일한 물품으로서 미화 5천달러 상당액미만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금결제방법의 변경

3. 반출·반입 유효기간의 연장

4. 반출·반입 승인조건의 변경

②통일원장관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1. 2. 1>

③통일원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반출·반입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상공자원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1. 2. 1, 93. 3. 6>

제28조(교역대상 물품의 공고) 통일원장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고자 하는 교역대상물품에 관하여 협의회의 의결에 앞서 미리 상공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1. 2. 1, 93. 3. 6>

제29조(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①통일원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당사자에게 조정을 명할 때에는 미리 상공자원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1. 2. 1, 93. 3. 6>

②상공자원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교역당사자에게 교역에 관하여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원장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1. 2. 1, 93. 3. 6>

③통일원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역에 관한 조정을 명하거나 교역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상공자원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1. 2. 1, 93. 3. 6>

제 5 장 협력사업

제30조(협력사업자 승인의 요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91. 2. 1>

1.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2.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국내 또는 국외에서 최근 3년이내에 사업실적이 있을 것. 다만, 한국은행·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기타 협의회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의결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31조(협력사업자 승인의 절차)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1. 2. 1>

②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자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한다. <개정 91. 2. 1>

③통일원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협력사업자승인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1. 2. 1>

제32조(협력사업자 승인의 취소) 통일원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협력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1. 2. 1>

-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는 경우
- 2. 제30조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3.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을 얻는 사업외의 사업을 북한주민과 공동으로 행한 경우
- 4. 법 제27조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5. 최근 3년간 계속하여 협력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 6. 협력사업의 시행중 남북교류·협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경우
- 7.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33조(취소절차) ①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자 승인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취소의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 이를 해당 협력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 2.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협력사업자는 승인의 취소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4조(협력사업의 승인신청) ①협력사업자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 2. 1>

- 1. 사업계획서
- 2. 협력사업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 3. 협력사업 상대자와의 협의서
- 4. 북한 당국의 확인서
- 5. 기타 통일원장관이 협력사업 승인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제1항 각호의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원장관이 정한다. <개정 91. 2. 1>

제35조(협력사업의 승인요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승인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 가능할 것
2. 협력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남·북한간에 분쟁을 일으킬 상당한 사유가 없을 것
3.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없을 것
4. 협력사업자의 능력과 협력사업의 내용 및 규모와 부합될 것
5.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 또는 공공복리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제36조(협력사업의 승인) ①통일원장관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30일 이내에 협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승인할 수 있다. <개정 91. 2. 1>

②통일원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을 승인을 한 때에는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1. 2. 1>

③통일원장관은 협력사업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당해 사업승인의 유효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1. 2. 1>

제37조(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①통일원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에게 조정을 명할 때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1. 2. 1>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력사업자에게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통일원장관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1. 2. 1>

제38조(협력사업에 관한 보고)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1. 2. 1>

1. 북한측 상대자와의 사업의 약정 또는 계약의 체결
2. 사업의 착수
3. 사업진행상황

- 4. 사업의 만료 또는 제1호의 약정 또는 계약의 해지·해제
- 5. 사업의 진행중 분쟁 또는 사고의 발생
- 6. 기타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3호의 사업진행상황은 분기별로 매분기 종료후 20일 이내에, 기타의 사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일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1. 2. 1>

③통일원장관이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1. 2. 1>

제39조(외국환 거래가 수반되는 교류 및 협력) 법 및 이영의 규정에 의한 남한과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외국환의 거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 또는 외자도입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6 장 보 칙

제40조(결제업무 취급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제업무 취급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한국은행
- 2. 한국수출입은행
- 3. 외국환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
- 4. 외국환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전상 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

제41조(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 취급기관이 행하는 결제업무의 범위·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통일원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미리 재무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제업무의 범위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91. 2. 1>

제42조(수송장비운행의 승인신청)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항공기·철도차량 또는 자동차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운행승인을 얻고

자 하는 자는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 2. 1>

제43조(운행의 승인기준) 남한과 북한간의 선박 등을 운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운행목적에 부합하는 선박 등을 소지할 것
2. 소지하고 있는 선박 등의 조작 또는 운행능력이 있을 것
3. 선박 등을 운행하고자 하는 노선에 운행이 가능할 것
4.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 등을 운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해당 운송사업의 면허·등록을 받을 것
5.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소정의 교육을 받을 것
6. 기타 남북교류·협력의 발전과 운행의 안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제44조(협의 등) ①통일원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등의 운행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하기 전에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의 승인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91. 2. 1>

②통일원장관은 선박 등의 정기운행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운행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 2. 1>

제45조(운행승인서의 발급) 통일원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등의 운행을 승인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운행승인서를 교부한다. <개정 91. 2. 1>

제46조(통신역무의 제공)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과 북한간에 우편역무 또는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는 우편법과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하여 우편사업 또는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로 한다. <개정 91. 12. 31>

②남한과 북한간에 제공할 수 있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상우편물
2. 소포우편물

3. 유선전기통신

제47조(통신역무의 요금)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에 대한 요금은 국내우편요금, 전기통신역무에 대한 요금은 국내전기통신요금에 의한다. <개정 91. 12. 31>

제48조(통신역무의 취급절차) 남한과 북한간에 제공되는 우편역무 및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편법·우편물운송법·임시우편단속법·전기통신기본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의 관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91. 12. 31>

제49조(수당등)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 의견의 진술, 자료의 제공 등을 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수당 또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법 제2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외무역법 등 관계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법률을 준용한다.

②법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은 원산지가 북한인 물품에 한하여 준용하되, 원산지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원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1. 2. 1>

③법 제26조제3항제10호의 규정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관세법. 다만, 물품의 반입·반출에 따른 관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 등에 관한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3. 국세징수법
4. 부가가치세법
5. 특별소비세법
6. 주세법
7. 방위세법. 다만, 방위세법 제4조제1항제2호·제3호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교육세법

9. 식물방역법

10. 가축전염병예방법

④이 법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반출은 수출용원자재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 특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수출등”으로 본다.

⑤이 영에 정한 사항외에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다.

제51조(남한과 북한간에 반출·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등의 과세)

①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 또는 북한으로부터 제공받는 용역은 각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며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북한으로부터 반입되는 물품이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의 과세대상인 경우 출입장소로부터 당해 물품이 반출되는 때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되는 것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개정 93. 12. 31>

③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 제공되는 용역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수출품목 또는 국외제공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 및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개정 93. 12. 31>

제52조(휴대품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출입장소를 통하여 북한으로부터 남한

으로 들어오는 자의 휴대품·별송품으로서 왕래사유·체재기간·직업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50조제2항 및 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93. 12. 31>

②북한으로부터 남한을 방문하는 자에 대하여는 외국인관광객에 준하여 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세법의 감면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남북교류·협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과세) ①

남한과 북한간의 투자, 물품의 반출·반입,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감면 및 환급등에 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제6호 내지 제8호의 법률을 준용한다.

북한에 물품을 반출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수출 또는 외화획득사업으로 보며, 북한으로부터 물품이 반입되는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북한에서 소득이 있는 남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부과の特례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남한에서 소득이 있는 북한주민의 소득에 대하여 그와 동등한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

③남북교류·협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에 대하여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법령의 폐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91. 2. 1>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내지 제 4 조 생략

부 칙 <91.12.31>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내지 제 3 조 생략

부 칙 <93. 3. 6>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내지 제 4 조 생략

부 칙 <93. 3.30>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내지 제 7 조 생략

부 칙 <93.12.31>

①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 ④ 생략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정 1990. 11. 9 총리령 제371호

개정 1991. 3. 27 총리령 제384호(남북협력기금법시행규칙)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①영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 3 조(재외국민 등의 신분증명)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주민을 대리하여 남한방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주민등록증 대신에 여권을 제출할 수 있다.

제 4 조(방문증명서재발급신청서) 영 제1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증명서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제 5 조(방문기간연장신청서) ①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방문기간연장신청서를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 3. 27>

②영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병역법에 의한 기간연장허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북한방문신고서 등) ①영 제18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방문신고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방문결과보고서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제 7 조(북한주민접촉신청서 등) ①영 제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주민접촉신청서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촉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내에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신·전화등의 방법으로 통일원장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사후에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1. 3. 27>

③통일원장관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 중요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1. 3. 27>

제 8 조(출입신고서 등) ①남한과 북한을 직접 왕래하는 자는 출입장소에서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출입신고서를 출입심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확인인은 별표와 같다.

③영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병역법에 의한 신고필증 또는 허가필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출입심사공무원은 제출자명부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9 조(협력사업자승인증) 영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업자승인증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수송장비운행승인서) 영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승인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1. 3.27)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생략

[별 표]

심 사 확 인 인

출입장소 :

일 자 : 년 월 일

출입심사관 :

15 mm

75 mm

[별지 제 1호서식]

북한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

<앞면>

							처리기간	30일	
①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한자:)			성별	남·여	사 진 3.5cm × 4.5cm		
	주민등록번호				신장	cm			
	주소·연락처	(전화:)							
	직업	소속	직위	(전화:)					
②등반자녀	성명(한자)	생년월일	성별	신장	사진	사진			
				cm	2.5cm × 3cm	2.5cm × 3cm			
				cm					
③방문대상 자 인적 사항	성명	나이	거주지			소속 및 직위	관계		
④방문목적									
⑤방문경위 (초청장, 방문 문합선 및 개인 포함)									
⑥방문예정 일정(일시, 방문지역)									
⑦방문 및 귀환 예정 경로									
⑧방문경험 (과거 3년 이내)									
<p>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문증명서발급을 신청하며, 이 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북한지역을 방문하는 기간 및 그 전후에 국가안전보장·공공질서·공공복리 및 남북한 관계개선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서약합니다.</p>									
첨부서류: 뒷면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신청인: _____									
통일원 장관 귀하									
							수수료		
							없음		

11R22-00111 민
94.10.12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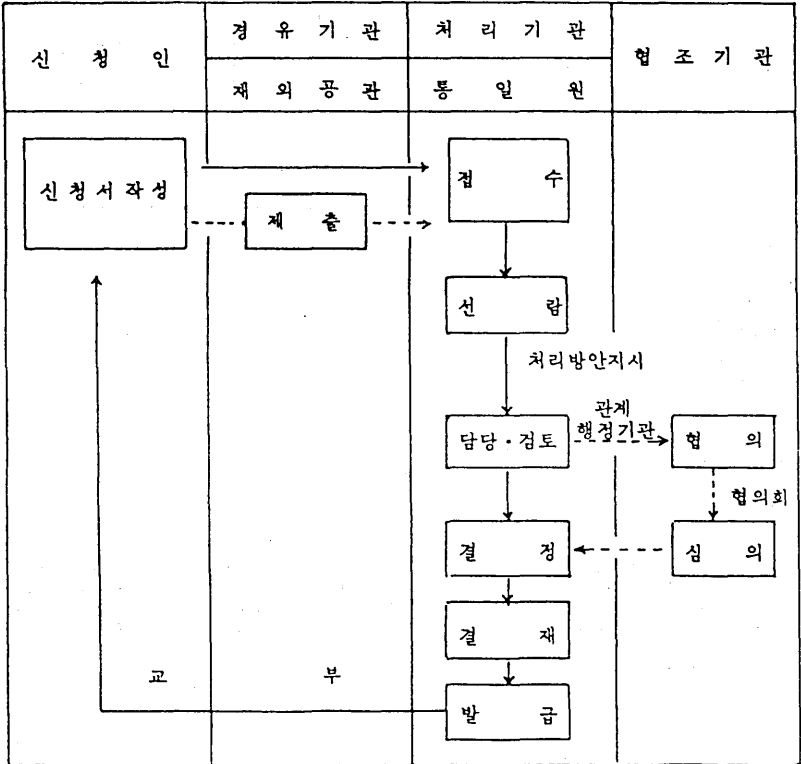
210 mm × 297 mm
인쇄용지(특급) 80 g / m²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협력 실무안내

첨부서류 : 1. 신원진술서

2. 방문증명서용 사진 4매 (동반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동반자녀의 사진 4매 포함)
3. 병역법 제 62 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또는 허가서 (해당자에 한함)
4.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5.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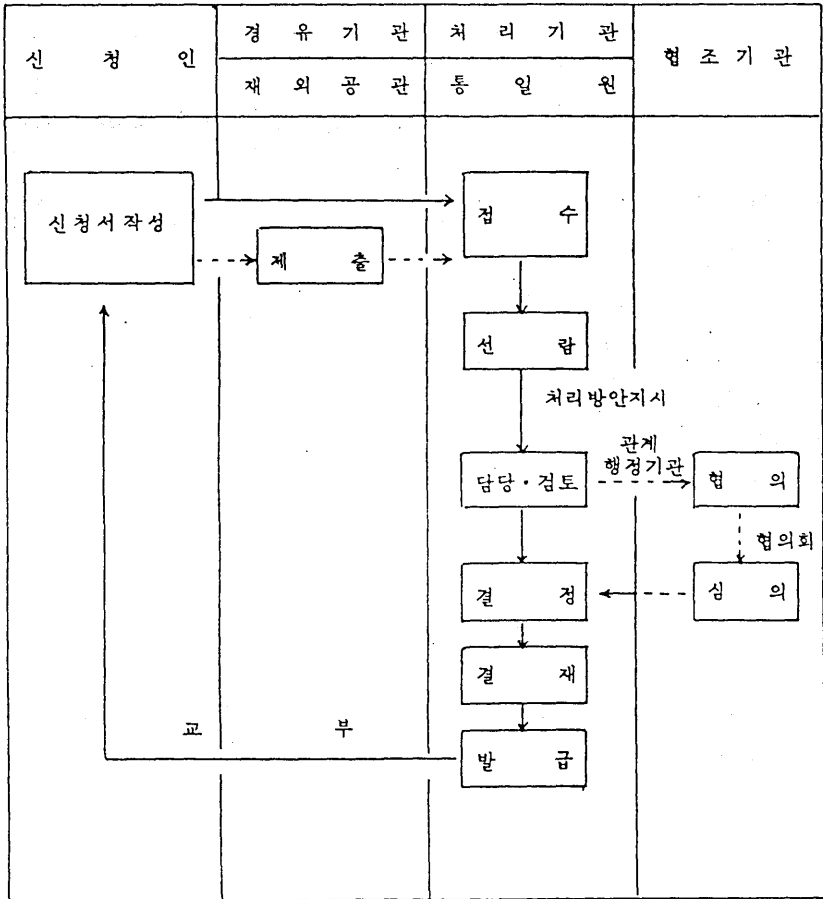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협력 실무안내

- 첨부서류 : 1. 방문증명서용 사진 4매 (동반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동반자녀의 사진 4매 포함)
2.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서류 또는 자료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 3 호서식]

방문증명서재발급신청서

<앞면>

처리기간	5 일
------	-----

① 인적사항	성명	(한자:)		성별	남·여	사 진 3.5 cm × 4.5 cm
	구증명서번호		생년월일			
	주소·연락처	(전화:)				
	방문지					

② 재발급 사유	
----------	--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 9 조제 1 항 및 동법시행령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며, 이 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기재사항에 허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에 서약한 사실을 준수할 것입니다.

첨부서류: 뒷면

년 월 일

신청인

인

통일원 장관 귀하

수수료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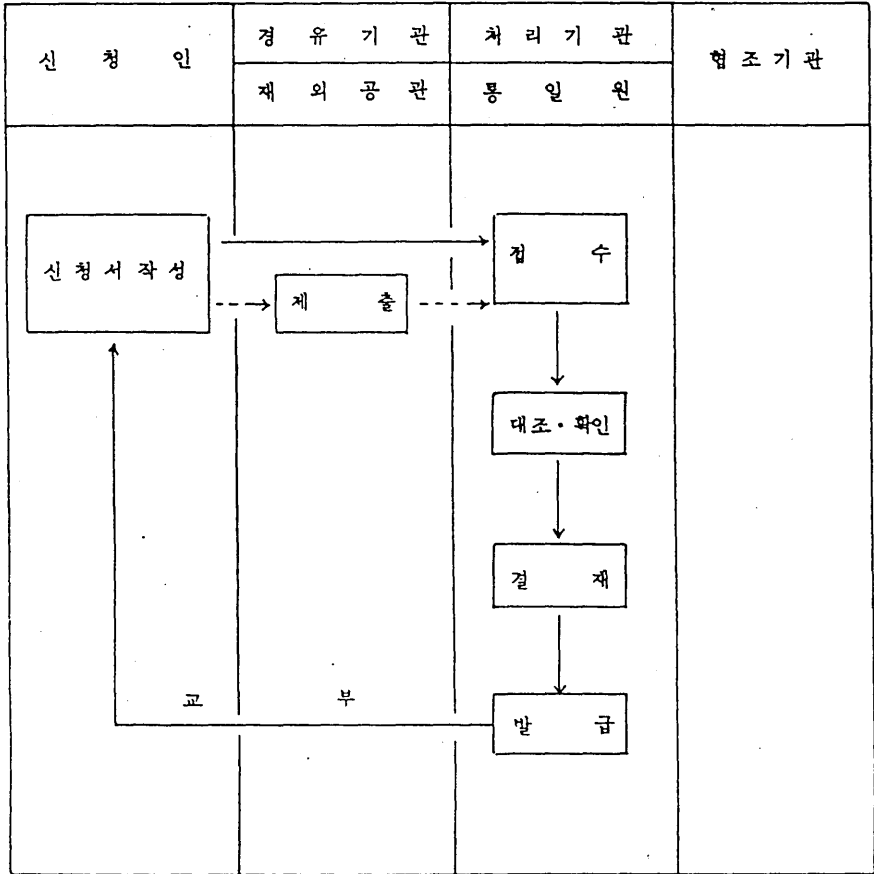
11022-00511 민
90.10.12 승인

190 mm × 268 mm
인쇄용지 (특급) 80 g / m²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협력 실무안내

- 첨부서류 : 1. 증명서 재발급용 사진 2매
 2. 통일원장관이 검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 4 호서식]

방문기간연장신청서

<앞면>

처리기간	14 일
------	------

①인적사항	성 명	(한 자 :)	성 별	남·여
	구증명서번호		생년월일	
	주소·연락처			
	방문지			

②연장기간	
-------	--

연 장 전	연 장 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개월)]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개월)]

③연장사유	
-------	--

남북고류협력에관한법률 제 9조제 1항 및 동법시행령 제 16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기간연장요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없음

년 월 일

신 청 인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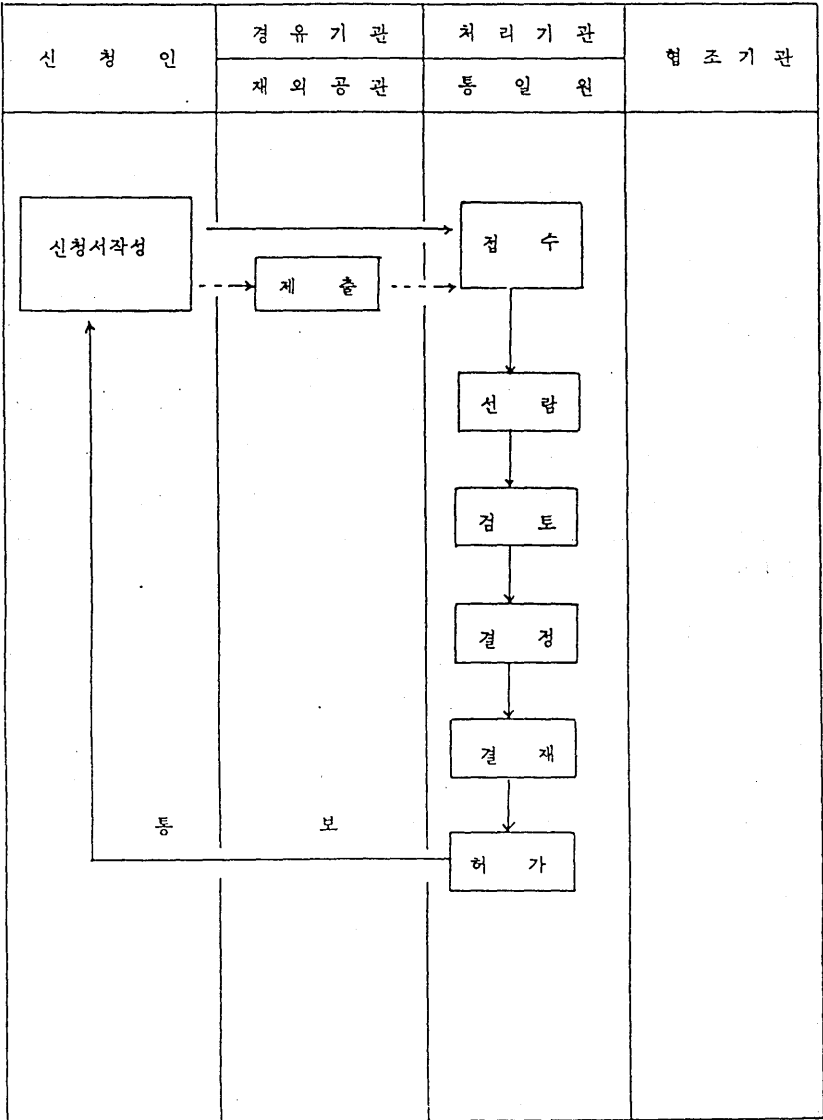
통 일 원 장 관 귀 하

수수료
없 음

11022-00611 민
90.10.12 승인

190 mm x 268 mm
인쇄용지 (특급) 80 g/m²

<뒷면>



- [별지 제5호시식]
- 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 신고번호는 공관별 전문 전치부호-신고년도(마지막 두자리)
 - 공관별 신고접수·순위로 공관에서 기재.
- (예: 주한미대사관 US-88-001. 주일대사관 JA-88-125)

북한 방문 신고서							
신고번호:			신고일자: 년 월 일				
① 신 고 자	성	명	성별	남·여		사 진 (반명함판) 3cm×4cm	
	생년월일						
	주소·연락처		전화번호				
	직업		전화번호				
②여권번호			여권유효기간				
③방문경위 (입북이자회득등)							
④방문목적(사유)							
⑤방문기간(일정)							
⑥방문경로 (경유지포함)							
⑦여행지내 연구자 또는 접촉인물	성	명	나이	거주지	소속 및 지위	관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 9 조 제 2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8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지역 방문을 신고하며,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 국가이익에 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첨부서류: 채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신 고 인:			㉞(또는 서명)				
대 사 (총 영 사) 귀 하							

11022-00711 민
90.10.12 승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80g/㎡

[별지 제 6 호서식]

북한방문결과보고서

① 보고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여	사진 3cm × 4cm
	주소·연락처	(전화:)			
	직업	(전화:)			
	여권번호	여권유효기간			
① 방문대상자 (방문기관) (3인부터는 별지작성)	성명	소속 및 직위		기타	
② 방문목적					
④ 출발일			⑤ 귀환일		
⑥ 방북신고미필사유					
⑦ 방문 및 귀환경로					
⑧ 방 문 일 정					
년 월 일	방 문 지 역		활동내용 및 견담자		
※ 세부활동내용 및 참고사항은 별지작성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방 문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첨부서류: 제외공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년 월 일					
작성 자:				⑨ (또는 서명)	
대사(총영사) 귀하					

11022-00811 민
90.10.12 승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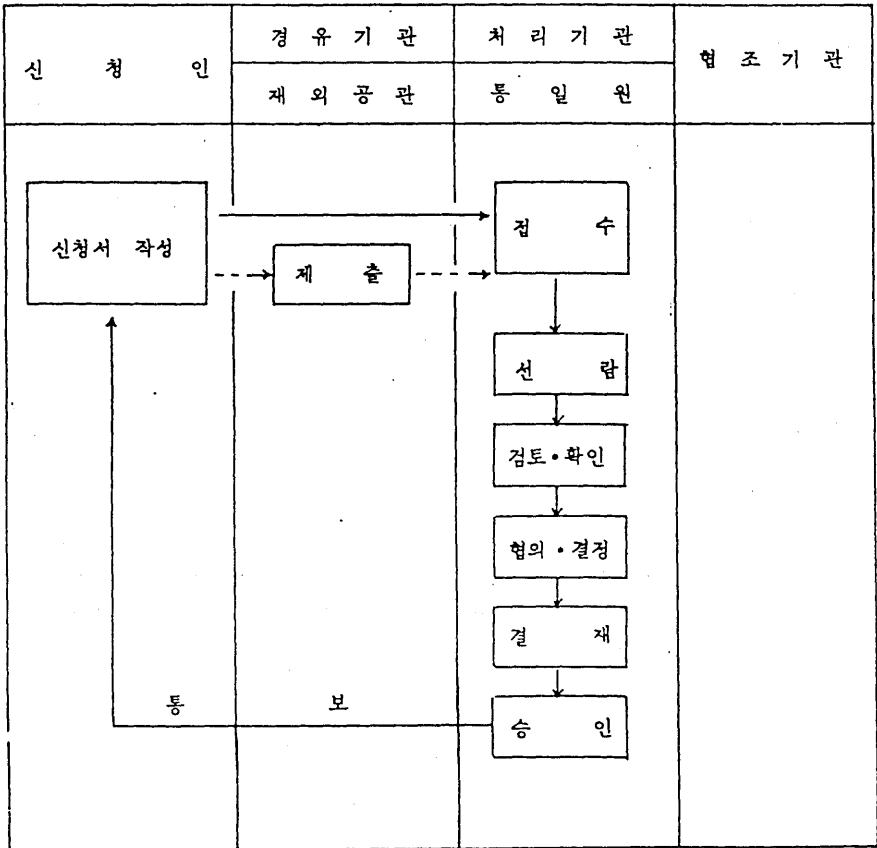
210mm × 297mm
인쇄용지(특급) 80g/㎡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협력 실무안내

첨부서류 : 1. 신원진술서

2. 통일원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별지 제 8 호서식]

북한주민집축결과보고서

① 보고인 인적사항	성 명	(한 자)					
	주민등록 번호	(여권번호 :)					
	주소· 연락처	(전화 :)					
	직 업	(전화 :)					
② 피집속인 인적사항	성 명	나이	거 주 지			소속 및 직위	신청인과의 관계
③ 집축목적							
④ 집축일시 및 장소							
⑤ 집축경위							
⑥ 집축방법							
⑧ 집 축 결 과 개 요							
※ 세부내용 별지작성							
<p>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 4 조제 3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9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주민집축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제 출 자 : ㉑</p> <p style="text-align: center;">통 일 원 장 관 귀 하</p>							

11022-01011 연
90.10.12 승인

210 mm × 297 mm
인쇄용지 (특급) 80g / m²

[별지 제9호서식]

출 입 신 고 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깨끗하고 바르게 적어 주십시오. ● <input type="checkbox"/>속은 적지 마십시오. ● 방문증명서 속에 보관하십시오. 			
이름	한자이름		
생년월일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후단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 <input type="checkbox"/> 여	
방문증명서번호	직장 및 직위 직장명 : 직 위 :		
거주지 연락처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주소 : 전화번호			
방문지 연락처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주소 : 전화번호 :			
방문목적	방문에정기간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input style="width: 20px;" type="text"/>		
공용란			

11022-01111 민
90.10.12 승인

84 mm × 144 mm
NCR 889 / ml

[별지 제 10 호서식]

승인번호 제 호

협력사업자승인증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구분

주 소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 16조제 1항 및 동법시행령 제 31조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협력사업자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통 일 원 장 관

인

11022-01411 일
90.10.12 승인

190 mm × 268 mm
인쇄용지 (특급) 120 g / m²

[별지 제 11 호서식]

수송장비운행승인서

상호(명칭)				운행승인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수송장비의 종 류				수송장비명칭	
운행노선					
운행승인 유효기간					
운행승인구분	정 기		회	부정기	회
<p>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 20 조제 1 항 및 동법시행령 제 45 조의 규정에 의 하여 위와 같이 남북한간에 수송장비의 운영을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통 일 원 장 관 인</p>					

11022-01511 일
99.10.12 승인

190 mm × 268 mm
인쇄용지 (특급) 120 g/m²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

제정 1990. 8. 13 통일원고시 제90-1호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한을 왕래하는 자가 휴대할 수 없는 물품 및 그 처리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입을 불허한다.

- 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가안보·공안 또는 풍속을 해할 도서·간행물·영화·음반·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
- 나. 화폐·수표·어음·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모조품
- 다. 총포·도검 및 화약류등
- 라. 마약·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와 이들의 생산품
- 마. 기타 출입심사공무원이 위협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출을 불허한다.

- 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금지 물품으로 규정된 물품
- 나. 군사상 기밀 및 남한 당국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에 공하는 물품
- 다. 군수물자와 방위산업용품(국제군수품 목록에 규정된 품목)
- 라. COCOM 수출 규제품목
- 마. 보호문화재 등
- 바. 반출될 경우 국내산업보호에 위해를 미칠 가능성이 농후한 물품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반입이 허용된다.

- 가. 식품류(식품위생법 제16조에 해당하는 물품)
- 나. 검역대상 물품
- 다. 기타 물품의 성질 또는 수량으로 보아 여행자의 여행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상용에 공하여 질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은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반출·입이 허용된다.

- 가. 물품의 성질 또는 수량으로 보아 여행자의 여행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5. 반출·입 규제대상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휴대품보관증에 기재한 후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한다.
6.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면서 휴대한 물품중 반출·입이 규제되어 보관된 물품은 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7. 휴대한 물품중 반출·입이 규제되는 물품으로서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고 반출·입되는 경우 세관장이 인정하는 휴대품의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북한왕래주민의휴대품검사및반출입요령

제정 1990. 8. 31 관세청고시 제90-647호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1조, 동시행령 제22조, 제23조, 제50조 내지 제52조 및 남북한왕래자의휴대금지품및처리방법고시(통일원고시)에 따라 남북한왕래주민의휴대품검사및반출입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남한 또는 북한주민이 상대방지역을 왕래할 때 휴대하는 물품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는 지침을 정하여 왕래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대상) ①이 요령은 남북한주민이 제3국을 경유하지 않고 남·북한을 직접 왕래할 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남·북한주민 이외의 자가 남·북한을 직접 왕래하거나, 남·북한 주민이 제3국을 경유하여 출입경하는 경우에는 관세법등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제 2 장 휴대품 검사

제 3 조(휴대품신고서 제출) 남·북한을 왕래하는 주민은 입경할 때 왕래주민 휴대품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방문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 4 조(화폐등의 신고) ①남·북한을 왕래하는 주민은 입경할 때 외국환관리법등에서 정한 일정한도액을 초과하는 외국화폐, 여행자수표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등을 휴대반입할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관공무원은 외국환등록증을 작성하여 신고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 5 조(휴대품 검사) ①세관공무원은 남·북한을 왕래하는 모든 주민의 휴대품 및 별송품에 대하여 검사한다.

②제1항의 검사시 세관공무원은 반출입 규제물품의 휴대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 6 조(검사방법) ①남·북한을 왕래하는 주민의 휴대품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X-RAY투시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고, 신변 휴대품에 대하여는 금속탐지기에 의한 간접검사를 실시한다.

②간접검사 결과 이상이 있거나, 거동이 수상하거나 휴대품을 과다하게 소지한 자등에 대하여는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관계기관의 협조요청이 있거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이검사를 실시하거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 3 장 휴대품 반출입

제 7 조(휴대품 반출입 허용의 범위) ①남·북한을 왕래하는 주민의 방문목적, 체류기간, 방문자의 직업 기타 사유를 감안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내의 휴대품은 반출입을 허용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일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그 허용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 8 조(반출입 규제물품) ①다음의 물품은 반출입을 불허한다.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이 고시한 별첨 반출입금지물품

②다음의 물품은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반출입을 허용한다.

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일원장관이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야 반출입이 허용된다고 고시된 반출입 제한물품

2. 외국환관리법등에서 정한 일정한도액을 초과하여 반출하는 외국화폐등

③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제대상물품중 관계법규에 그 내용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그 구체적인 규제의 범위등을 정할 수 있다.

- 제 9 조(반출입 규제대상물품등의 처리) ①세관공무원은 제7조에 규정한 휴대품의 범위를 초과한 물품과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반출입이 규제되어 반출입이 허가되지 않은 물품은 휴대품보관증(별지 제2호서식)을 왕래자에게 교부하고 물품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 ②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면서 반출입이 규제되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된 물품은 관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귀환시 반송 또는 반환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된 물품중 반송 또는 반환되지 않는 물품은 관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4 장 과 세

- 제10조(반입 휴대품에 대한 과세) ①남·북한을 왕래하는 주민이 반입하는 휴대품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등 제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때 원산지가 제3국인 물품도 포함한다.
- ②제7조의 규정에 의한 휴대품의 범위를 초과한 물품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입이 규제된 물품으로서 관계기관의 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 반출입하는 물품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 5 장 승무원의 휴대품 처리 등

- 제11조(승무원의 반출입 휴대품 처리) 남·북한 주민이 수송장비의 승무원으로서 남·북한을 왕래할 때 휴대하여 반출입되는 물품은 일반 남·북한 왕래 주민의 휴대품과 같이 처리한다.
- 제12조(관세법등 관세규정 준용) 본 요령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세법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고시는 1990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대한민국 세관
왕국주민 휴대품 신고서

199 년 월 일

이 신고서는 남·북한왕래주민의 휴대품검사를 신속히 하
기위한 것이오니 성실하게 기재하신 후 세관직원에게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 명 :	
2. 생년월일 : 년 월 일	3. 성별 :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4. 주 소 :	
5. 직 업 :	6. 국 적 :
7. 방문목적 :	8. 방문증명서(여권)번호:
9. 방문기간 :	10. 동반가족수 : 명

통관안내

1. 귀하의 방문목적, 방문기간, 직업등을 참작하여 휴대품
의 통관 허용범위가 결정되오니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
요.
2. 휴대품중 반입이 규제되는 물품(총기류 등)은 귀환할 때
찾아가시면 됩니다.
3. 후면 신고대상 물품은 반드시 서면신고 하여야 합니다.

서면신고대상물품

해당란에 (○) 표

소 지 물 품	있음	소 지 물 품	있음
총포, 도검, 화약등 무기류		국헌, 공안, 풍속을 해할 물품류	
마약, 대마, 향정신 성 의약품류		화폐, 증권의 위조, 변조, 모조품	
동물, 식물류 등 검역대상 물품		무선통신용 송·수신 기	
350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화폐 등			
신고금액 :			

위 신고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습니다.

신고인 서명 :

검사대 번호 :	검사자 :
----------	-------

[별지 제2호서식]

휴대품보관증

보관증번호 :

화물Tag번호 :

성명		생년월일	19 . .					
		국적						
방문증명서번호		방문기간						
주소								
남북한 왕래주민의 휴대품 검사 및 반출입 요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물품을 보관합니다.								
<table border="1"> <tr> <td>담당</td> <td>19</td> </tr> <tr> <td></td> <td></td> </tr> </table>		담당	19			서울세관장		
담당	19							
포장종류	수량	품명	중량	비고				
계								

보관물품인도내역			
보관증번호		인도물품	
화물Tag번호			
출입국일시		성명 및 서명	(인)

南北協力基金法

制定 1990. 8. 1 法律 第4240號
改正 1990. 12. 27 法律 第4268號(政府組織法)
1993. 12. 31 法律 第4675號(國債法)

第1條(目的) 이 法은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에 의한 南北間의 相互交流와 協力을 지원하기 위하여 南北協力基金을 設置하고 그 運用·管理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交易” 및 “協力事業”이라 함은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 第2條第2號 및 第4號에 規定된 交易 및 協力事業을 말한다.
2. “金融機關”이라 함은 銀行法 기타 法律에 의한 銀行인 金融機關을 말한다.

第3條(基金의 設置) 政府는 이 法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한 資金을 확보·供給하기 위하여 南北協力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第4條(基金의 財源) 基金은 다음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政府 및 政府외의 者の 出捐金
2. 第5條의 規定에 의한 長期借入金
3. 國債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 <개정 93. 12. 31>
4. 基金의 運用收益金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

第5條(長期借入) ①統一院長官은 基金의 財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基金의 부담으로 財政投融资特別會計, 다른 基金, 金融機關등으로부터 資金을 長期借入할 수 있다. <개정 90. 12. 27>

②統一院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金을 借入할 때에는 미리 財務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90. 12. 27>

第6條 삭제 <개정 93. 12. 27>

第7條(基金의 運用·管理) ①基金은 統一院長官이 運用·管理한다. <개정 90. 12. 27>

②統一院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事

務를 金融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개정 90. 12. 27>

③統一院長官이 基金運用計劃을 수립할 때에는 基金運用計劃중 經濟 및 財政·金融政策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經濟企劃院長官 및 財務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90. 12. 27>

④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法律第4條의 規定에 의한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1.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基本政策
2. 基金運用計劃
3. 決算報告事項
4. 기타 統一院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90. 12. 27>

第8條(基金의 用途) 基金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用途에 사용한다.

1. 南北의 住民의 南北間 往來에 필요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2. 文化·學術·體育分野 協力事業에 소요되는 資金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3. 交易 및 經濟分野 協力事業을 促進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資金의 南韓住民(法人·團體를 포함한다)에 대한 지원 또는 融資
4. 南北交流·協力を 促進하기 위하여 換錢等 代金決濟의 편의를 제공해 주거나 資金을 融資해 주는 金融機關에 대한 資金支援 및 損失補填과 金融機關으로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非指定通貨의 引受
5. 기타 民族의 信賴와 民族共同體 회복에 이바지하는 南北交流·協력에 필요한 資金의 融資·지원 및 南北交流·協力を 增進하기 위한 事業의 지원
6. 借入金 및 國債管理基金으로부터의 預受金の 元利金償還<개정 93. 12. 31>
7. 基金의 造成·運用 및 管理를 위한 經費의 支出

第9條(基金의 會計機關) ①統一院長官은 基金의 收入과 支出에 관한 事務를 行하게 하기 위하여 所屬 公務員중에서 基金出納命令官과 基金出納公務員을 任命한다.

②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事務를 委託한 경우에는 統一院長官은 委託받은 銀行의 理事중에서 基金出納擔當理事를, 그 職員중에서 基金出納職員을 각각 任命할 수 있다. 이 경우 基金出納擔當理事는 基金出納命令官의 職務를, 基金出納職員은 基金出納公務員의 職務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90. 12. 27>

③會計關係職員等の責任에 관한法律중 歲入徵收官과 財務官에 관한 規定은 基金出納命令官과 基金出納擔當理事에게, 支出官과 出納公務員에 관한 規定은 基金出納公務員과 基金出納職員에게 각각 이를 準用한다.

第10條(一時借入) ①統一院長官은 基金의 運用上 필요한 때에는 基金의 부담으로 韓國銀行 기타 金融機關으로부터 資金을 一時借入할 수 있다. <개정 90. 12. 2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一時借入金은 당해 會計年度에 償還하여야 한다.

第11條(보고 및 還收) ①統一院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基金을 사용하는 者에게 그 使用計劃 및 使用結果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0. 12. 27>

②統一院長官은 基金을 사용하는 者가 당해 基金支出目的외에 사용한 때에는 支出된 基金의 전부를 還收할 수 있다. <개정 90. 12. 27>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의 還收에 대하여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한 다.

第12條(餘裕資金의 運用) 統一院長官은 基金에 餘裕資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各號의 방법으로 이를 運用할 수 있다. <개정 90. 12. 27>

1. 國債·公債의 買入
2. 財政投融资特別會計의 預託
3. 金融機關에의 短期預置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

第13條(이익 및 缺損의 처리) ①基金의 決算上 利益金이 생긴 때에는 이를 全額 積立하여야 한다.

②基金의 決算上 損失金이 생긴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積立金으로 補填하고, 그 積立金으로 부족한 때에는 政府가 豫算의 범위안에서 이를 補填할 수 있다.

第14條(監督 및 命令) 統一院長官은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金의 運用·管理에 관한 事務를 委託한 경우에는 그 委託事務를 監督하며, 이에 必要한 命令을 할 수 있다. <개정 90. 12. 27>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협력 실무안내

附 則

이 法은 公布후 60日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 則<90. 12. 27>

第 1 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省略>

第 2 條 내지 第10條 省略

附 則<93. 12. 31>

第 1 條(施行日)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 2 條 내지 第 8 條 省略

남북협력기금법시행령

제정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237호

개정 1991. 2. 1 대통령령 제13269호(통일원과그소속기관직제)

1993. 3. 6 대통령령 제13869호(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 1 조(목적) 이 영은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금의 재원) 법 제4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을 말한다.

1.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2. 남북교류·협력사업 시행과정에서 징수되는 수입금

제 3 조(채권의 발행) ①통일원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북협력기금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채권의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1. 2. 1>

1. 발행의 이유
2. 발행요청액
3. 액면금액의 종류
4. 소화계획
5. 발행조건
6. 기타 채권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②채권의 이자율은 재무부장관이 발행당시의 국·공채 및 보증사채등의 금리수준을 고려한 시장실세금리를 참작하여 이를 정한다.

③채권은 액면금액 또는 할인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제 4 조(채권사무의 취급) 통일원장관은 기금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채권의 매출 및 상환등에 관한 사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1. 2. 1>

제 5 조(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통일원장관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이

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그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91. 2. 1>

②기금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무를 행함에 있어서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이를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운용·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6 조(기금운용계획) ①통일원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1. 2. 1>

②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 총칙
2. 재원별 기금조성계획
3. 자금사용계획
4. 추정대차대조표
5. 추정손익계산서
6.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 7 조(기금의 지원등의 절차) ①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원장관에게 기금의 지원, 융자, 손실보전 또는 비지정통화의 인수(이하 “지원등”이라 한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 2. 1>

②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하되, 총리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총리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1. 2. 1, 93. 3. 6>

1. 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재무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2. 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문교부장관·문화체육부장

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3. 법 제8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인 경우에는 경제기획원장관·재무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③통일원장관은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하기 전에 기금수탁관리자로 하여금 기금의 지원등의 타당성·규모 및 조건등을 검토한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1. 2. 1>

④통일원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지원등을 결정한 때에는 이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1. 2. 1>

제8조(기금의 지원등의 요건)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 기금의 지원등의 요건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리규정(이하 “기금운용관리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용자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남북교류·협력의 시행시기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한국수출입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일반적인 조건의 용자로서는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손실보전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환전업무등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통화의 인수비용, 환거래비용,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기타 부대경비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나.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따른 대금결제업무의 취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손실의 지원 및 채권의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용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라. 기타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의 지원·용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의 지원 또는 손실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용자·지원 및 사업의 지원은 남한과 북한의 당국간의 합의 또는 협의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9조(지원의 방법) ①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교역 및 경제분

야 협력사업의 시행을 위한 보증 또는 동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조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 및 손실보조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의 에 그 요건·절차·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비지정통화) 법 제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지정통화”라 함은 북한에서 발행되어 유통되는 화폐를 말한다.

제11조(회계기관의 임명통지) 통일원장관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출납명령관(기금출납담당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금출납공무원(기금출납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임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감사원·재무부장관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1. 2. 1>

제12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기금계정의 설치) 통일원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남북협력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1. 2. 1>

제14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기금은 출연금, 차입금, 채권발행자금, 회수금,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기타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수입으로 한다.

②기금은 지원금, 융자금, 비지정통화의 인수금, 원리금, 상환금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그 지출로 한다.

제15조(결산보고서) ①통일원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 2. 1>

②제1항의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16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수탁관리자는 기금의 회계를 한국수출입은행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계리는 기업회계원칙에 의한다.

제17조(기금의 사용계획·결과보고) ①기금의 지원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금의 지원등을 신청할 때에 기금사용계획서를, 기금의 지원등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기금사용결과보고서를 각각 통일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 2. 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용계획서 및 기금사용결과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기금의 환수)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환수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당해 기금출납명령관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환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통일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통일원장관은 이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1. 2. 1>

②기금의 환수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12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유가증권의 매입을 말한다.

제20조(기금운용관리규정) ①통일원장관은 법 및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등의 조건·절차·방법·사후관리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금운용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1. 2. 1>

②통일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정할 때에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1. 2. 1>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1. 2. 1)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내지 제 4 조 생략

부 칙(91. 3. 6)

제 1 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내지 제 4 조 생략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1992년 2월 19일 발효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남 북 화 해

- 제 1 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 제 2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 제 3 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 제 4 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제 5 조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 제 6 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 제 7 조 남과 북은 서로의 긴밀한 연락과 협의를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 제 8 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화해에 관한 합의서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

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2 장 남 북 불 가 침

제 9 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제 11 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

제 12 조 남과 북은 불가침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는 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실현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추진한다.

제 13 조 남과 북은 우발적인 무력충돌과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쌍방 군사당국자 사이에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제 14 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 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불가침에 관한 합의서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3 장 남 북 교 류 · 협 력

제 15 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 16 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

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제18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제19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제20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제21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와 문화 등 여러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제22조 남과 북은 경제와 문화 등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이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23조 남과 북은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안에 본회담 테두리 안에서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다.

제 4 장 수정 및 발효

제24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제25조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서로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1년 12월 31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무총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측대표단 단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무원 총리 연형목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 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1992년 9월 17일 발표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협의한데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경제교류·협력

제 1 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 ① 남과 북은 물자교류와 석탄, 광물, 수산자원 등 자원의 공동개발과 공업, 농업, 건설, 금융, 관광 등 각분야에서의 경제협력사업을 실시한다.
- ②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대상과 형식, 물자교류의 품목과 규모를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 ③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규모, 물자교류의 품목별 수량과 거래조건을 비롯한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쌍방 교류·협력 당사자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한다.
- ④ 남과 북사이의 경제협력과 물자교류의 당사자는 법인으로 등록된 상사, 회사, 기업체 및 경제기관이 되며 경우에 따라 개인도 될 수 있다.
- ⑤ 남과 북은 교류·협력 당사자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경제협력사업과 물자교류를 실시하도록 한다.
- ⑥ 교류물자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여 물자교류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 ⑦ 남과 북사이의 물자교류는 상호성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실현한다.

- ⑧남과 북사이의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다.
- ⑨남과 북은 청산결제은행 지정, 결제통화 선정 등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 ⑩남과 북은 물자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남북사이의 경제관계를 민족내부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추진한다.
- ⑪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업규격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서로 교환하며 교류·협력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자기측의 해당 법규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⑫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보장, 이종과세방지, 분쟁조정절차등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 ⑬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에 참가하는 상대측 인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편의를 보장한다.

제 2 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 ①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정보자료의 교환, 해당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공동연구 및 조사, 산업부문의 기술협력과 기술자, 전문가들의 교류를 실현하며 환경보호대책을 공동으로 세운다.
- ②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 과학·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 3 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 ①남과 북은 우선 인천항, 부산항, 포항항과 남포항, 원산항, 청진항 사이의 해로를 개설한다.
- ②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교류·협력 규모가 커지고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는데 따라 해로를 추가로 개설하고,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비롯한 육로를 연결하며 김포공항과 순안비행장 사이의 항로를 개설한다.
- ③남과 북은 교통로가 개설되기 이전에 진행되는 인원왕래와 물자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임시교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 ④남과 북은 육로, 해로, 항로의 개설과 운영의 원활한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 ⑤남북사이의 교류물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개설한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하여 직접 수송하도록 한다.
 - ⑥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교통수단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취한다.
 - ⑦남과북은 교통로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 ⑧남과 북은 남북사이에 운행되는 교통수단과 승무원들의 출입절차, 교통수단, 운행방법, 통과지점 선정등 교통로 개설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하여 정한다.
- 제 4 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과 전기통신 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 ①남과 북은 빠른 시일안에 판문점을 통하여 우편과 전기통신을 교환, 연결하도록 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 ②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서 공적 사업과 인도적 사업을 우선 보장하며, 점차 그 이용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 ③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정치·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 ④남과 북은 우편 및 전기통신교류와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 ⑤남과 북사이에 교류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의 종류와 요금, 우편물의 수집, 전달방법 등 기타 실무적 문제들은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 제 5 조 남과 북은 국제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 ①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 ②남과 북은 경제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 제 6 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 제 7 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 제 8 조 이 합의서 『제1장 경제교류·협력』 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 2 장 사회문화교류·협력

제 9 조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

- ①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 및 연구·출판·보도자료와 목록 등 정보자료를 상호 교환한다.
- ②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기술 협력을 비롯한 다각적인 협력을 실시한다.
- ③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국토 종단행진, 대표단 파견, 초청·참관 등 기관과 단체, 인원들사이의 접촉과 교류를 실시한다.
- ④ 남과 북은 교육, 문학·예술, 보건, 체육, 출판·보도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 조사, 편찬사업, 행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며 예술작품, 문화유물, 도서출판물의 교환전시회를 진행한다.
- ⑤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데 따라 상대측의 각종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 10 조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 ① 남과 북은 모든 민족구성원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공동으로 취한다.
- ② 민족구성원들의 왕래는 남북사이에 개설된 육로, 해로, 항로를 편리한 대로 이용하게 하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국제항로도 이용할 수 있다.
- ③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방문지역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하도록 하며, 신변안전 및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 ④ 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이 상대측의 법과 질서를 위반함이 없이 왕래하고 접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 ⑤ 남과 북을 왕래하는 인원들은 필요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쌍방이 합의한 범위내에서 물품을 휴대할 수 있다.

⑥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인원에 대하여 왕래와 방문목적 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⑦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왕래자에게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취한다.

⑧남과 북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국제무대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①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②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12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13조 남과 북은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14조 이 합의서 『제2장 사회문화교류·협력』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한다.

제 3 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

제15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로운 서신거래와 왕래와 상봉 및 방문을 실시하고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며,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한다.

①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범위는 쌍방 적십자단체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②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왕래와 방문을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왕래절차에 따라 실현한다.

③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상봉 면회소 설치문제를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협의·해결하도록 한다.

④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⑤남과 북은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에 입각하여 상대측 지역에 자연재해 등 가족·친척들 가운데 사망자의 유품처리, 유골이전 등을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16조 남과 북은 이미 진행하여 오던 쌍방 적십자단체들의 회담을 빠른 시일안에 다시 열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17조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십자단체들의 합의를 존중하며 그것이 순조롭게 실현되도록 지원·보장한다.

제18조 이 합의서 『제3장 인도적 문제의 해결』부문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한다.

제 4 장 수정·발효

제19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20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기 ; 쌍방은 민족구성원들의 자유왕래에 저촉되는 법적, 제도적 장치철폐문제를 남북화해공동위원회 법률실무협의회에서 토의해결하기로 하였다.

1992년 9월 1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목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1992년 5월 7일 발효

남과 북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22조에 따라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의 이행을 위하여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제 1 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① 남과 북은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와 『남북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위원장은 쌍방이 합의하여 장관(부장) 또는 차관(부부장)급으로 하며, 부위원장과 위원들의 급은 각기 편리한 대로 한다.
- ④ 쌍방은 공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을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이를 통보한다.
- ⑤ 수행원은 각기 15명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⑥ 쌍방은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실무협의회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 2 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①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를 이행한다.
- ②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③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부속합의서의 이행과 관련이 있는 기타 세부사항을 협의·실천한다.
- ④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실무협의회들의 활동을 종합·조정한다.

제 3 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①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회문화분야 남북교류협력 실무안내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판문점, 서울, 평양 그리고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 할 수 있다.

③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쌍방 위원장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④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쌍방이 합의하여 공개로 할 수도 있다.

⑤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교류·협력 당사자, 해당 전문가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⑥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안전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⑦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 4 조 남북교류·협력공동위원회 회의의 합의사항은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쌍방 공동위원장이 합의문건에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 중요한 문건은 쌍방이 합의하여 총리가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실무협의회들의 회의 합의사항을 쌍방 공동위원장이 서명·교환하는 방식으로 발효시킨 경우에는 이를 해당 공동위원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제 6 조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992년 5월 7일

남 북 고 위 급 회 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대 한 민 국
국 무 총 리 정 원 식

북 남 고 위 급 회 담
북 측 대 표 단 단 장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정 무 원 총 리 연 형 목